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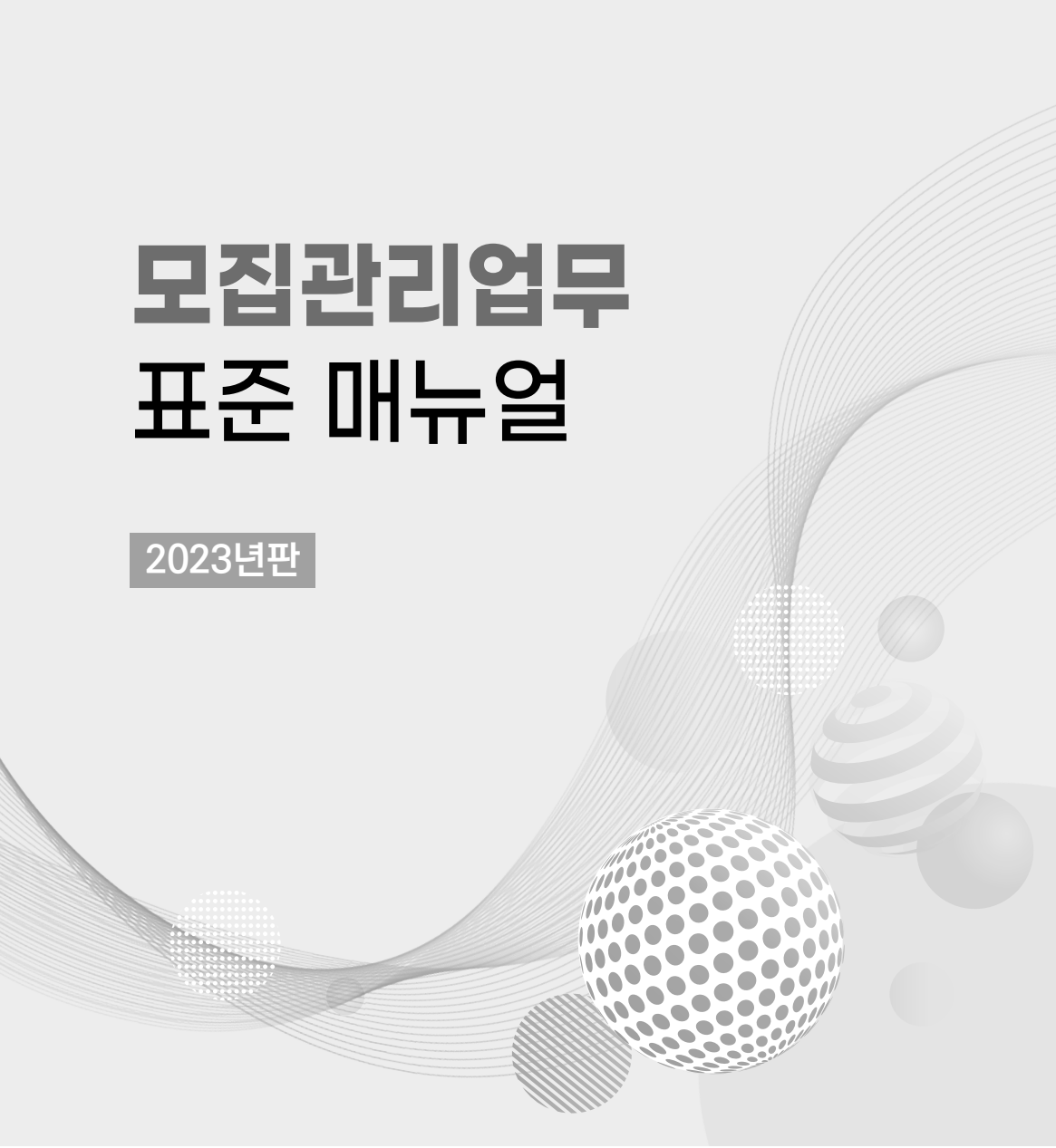

손해보험협회

목 차 CONTENTS

Part 1 보험의 모집

1.1. 정의[보험업법 제2조] ····· 2
1.2.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3
1.3. 모집종사자의 등록·신고·등록취소 절차 ····· 4

Part 2 보험설계사

2.1. 분류 및 영업범위 ····· 12
2.2. 자격조건 (교육 및 시험) ····· 15
2.3. 등록 ····· 20
2.4. 등록요건 및 신고절차 ····· 21
2.5. 보수교육 ····· 27
2.6. 말소 ····· 31
2.7. 기타 변경사항 ····· 33

목 차 CONTENTS

Part 3 보험대리점

3.1. 분류 및 영업범위 ····· 48
3.2. 등록 ····· 53
3.3.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 66
3.4. 겸업 ····· 78
3.5. 지점설치 ····· 81
3.6. 지점폐쇄 ····· 83
3.7. 계약체결 ····· 87
3.8. 계약해지 ····· 90
3.9. 업무폐지 ····· 91
3.10. 임원 및 유자격자 변경(등록·자격 변경·말소) ···· 96
3.11. 내용 및 기타 변경사항 ····· 100
3.12. 등록증 재발급 ····· 102
3.13. 합병 ····· 103

Appendix 1.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 106
Appendix 2.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매뉴얼 ····· 172

Part 1

보험의 모집

Part 1 보험의 모집

1.1. 정의[보험업법 제2조]

1.1.1. 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손해보험상품, 생명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구분 (보험업법 제2조제1호)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선불식 할부계약 제외

1.1.2.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상해 및 간병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나목)

1.1.3.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보험업법 제2조제1호 가목)

1.1.4.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다목)

1.1.5. 보험업 :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 (보험업법 제2조제2호)

1.1.6. 손해보험업 :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 (보험업법 제2조 제4호)

1.1.7.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 (보험업법 제2조 제3호)

1.1.8. 제3보험업 :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 (보험업법 제2조 제5호)

1.1.9.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1.2.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모집종사자) [보험업법 제83조]

1.2.1.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 (보험업법 제2조제9호)

1.2.2.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 (보험업법 제2조제10호)

1.2.3.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 (보험업법 제2조제11호)

1.2.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 :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보험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

1.3. 모집종사자의 등록·신고·등록취소 절차

1.3.1. 등록·신고 사항

구 분	등록·신고 사항
보험설계사	등 록
	말 소
	기타 변경사항*
보험대리점	등 록
	겸 업
	지점 설치 및 지점 폐쇄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지
	업무 폐지
	효력상실(합병)
	임원 및 유자격자 변경
	등록증 재발급
	기타 변경사항*
법인대리점 임원	등 록
	말 소
	기타 변경사항*

* 기타 변경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상호, 주소 등의 변경

1.3.2. 등록·신고 기관 : 금융위원회 → 보험협회로 위탁

※ 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 및 지점폐쇄 신고는 손해·생명보험협회 중 1개 기관에 신고하면 일괄처리 가능

근거법령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설계사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대리점에 관한 신고의 수리

1.3.3. 등록 취소

구분	등록 취소의 사유	근 거
보험설계사	1.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당시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5.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한한 경우 7. 보험업법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8.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9.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11. :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가능	보험업법 제86조 제1~2항
보험대리점	1. 보험업법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보험업법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보험업법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6.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8. 보험업법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9.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6~12. :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가능	보험업법 제88조 제1~2항

근거법령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 4. 17., 2020. 3.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1.3.4. 등록 취소의 기관 및 절차

① 등록 취소의 기관 : 금융위원회
② 등록 취소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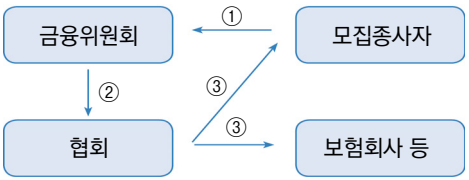

① 해당 모집종사자의 청문 실시
② 등록의 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협회 통지
③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해당 모집종사자 및 해당모집종사자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에 통지
※ 등록의 취소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수행

Part 2

보험설계사

Part 2 보험설계사

2.1. 분류 및 영업범위

2.1.1. 영위 종목별 분류

손해보험설계사	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대리점[간단보험대리점 포함]·손해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생명보험설계사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대리점·생명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제3보험설계사	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중개사 또는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대리점·생명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2.1.2. 유형별 분류

전 속 보험설계사	1개의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보험설계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1개의 보험회사 이외에 업종이 다른 1개의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보험설계사

근거법령

《보험업법》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 6., 2018. 6. 5.〉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1. 6., 2018. 6. 5.〉

1. 생명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다만, 간단손해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3. 제3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① 보험설계사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②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설계사(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는 모집하려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2.2. 자격조건 (교육 및 시험)

2.2.1. 교육

① 교육기관 : 보험회사·보험연수원·교육기관(금융위원회 고시기관)
② 교육내용 : 윤리교육, 관련법령 및 분쟁사례, 보험상품,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중개사 소속 설계사만 해당)

2.2.2. 보험설계사시험 주관기관

①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 제3보험
②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 제3보험

2.2.3. 시험 절차

□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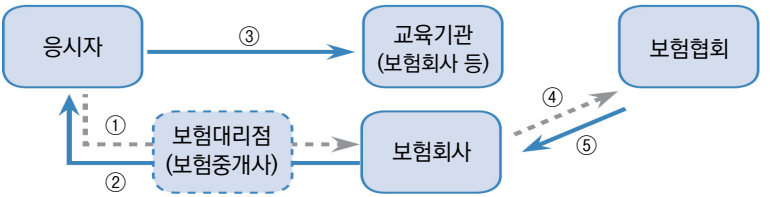

① 응시자는 보험회사에 시험응시 의사표시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응시자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에 시험응시 신청 대행을 요청
② 보험회사는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응시대상자 선발
③ 응시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④ 보험회사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보험협회로 시험응시 신청
(응시자는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시험에 합격하면 기존 교육 이수는 효력이 없으며 새롭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⑤ 시험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 시험합격 후 교육과정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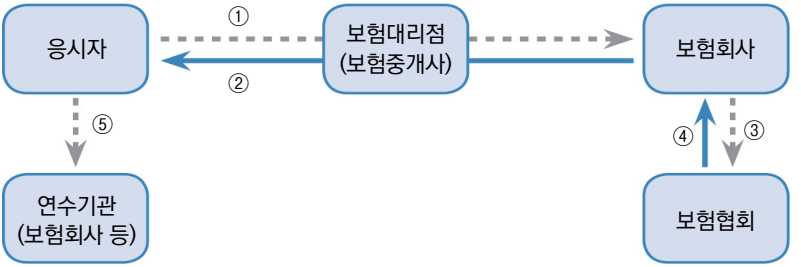

① 응시자는 보험회사에 시험응시 의사 표시
② 보험회사는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응시대상자 선발
③ 응시대상자에 대해 보험협회로 시험응시 신청
④ 시험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⑤ 시험합격자는 연수기관에서 연수과정 이수

(합격자는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기존 시험 합격은 효력이 없으며 새롭게 시험을 합격하여야 함)

2.2.4. 시험 관리

출제 방식	객관식
합격 기준	시험구분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 (2011.7.24일부터)
무효 사유	시험의 무효 및 0점 처리 - 보험회사 임직원, 등록 보험설계사 및 개인대리점이 응시한 경우 - 답안지를 훼손하여 채점할 수 없는 경우 - 답안지 기재사항(지역, 회사,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문제유형 등)을 오기 또는 누락한 경우 - 부정행위자 등
주의 사항	신분증* 및 수험표 미지참시 응시 불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발급한 신분증(전자신분증 포함)으로,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인정**

근거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생명보험설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손해보험설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3보험설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 비고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으로 한다.

[별표 4]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개정 2021. 6. 1.>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4)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및 별표 3 제1호라목의 보험설계사만 해당한다) 5)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나. 교육 기관	보험회사,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 시간	20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4)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목
나. 교육 기관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교육 시간	5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3.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3) 해당 간단손해보험상품
나. 교육 기관	보험회사,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 시간	8시간 이상.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 ① 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영 제27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2015. 1. 20. 개정, 2018. 6. 5.]

1.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가. 보험설계사 : 협회
   나. 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
3.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신설 2014. 4. 15.〉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조(협회의 등록 및 신고업무 처리지침) ① 협회의 장은 보험대리점 관련 등록·신고 및 보험설계사의 시험·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5. 4. 1., 2011. 1. 19.〉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3. 등록

2.3.1.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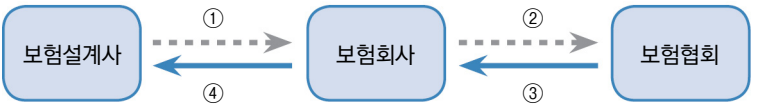

①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그 보험회사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출
※ 보험회사는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 보험설계사를 채용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보험설계사 등록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등록여부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등록이 완료된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는 영업개시

2.3.2.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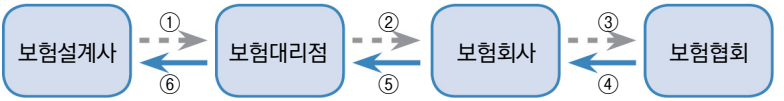

①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을 선택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출
② 보험대리점은 주된 보험회사에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
③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보험설계사 등록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④ 보험협회는 등록여부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등록결과 통보
⑥ 보험대리점은 등록이 완료된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는 영업개시
※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는 소속 중개사에서 보험협회로 전산신청이 아닌 등록서류 직접제출을 통한 신청을 하고, 협회는 등록심사 후 그 결과를 소속중개사에 결과통보

2.4. 등록요건 및 신고절차

2.4.1. 등록요건 :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교육 이수와 협회 또는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시험 합격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함
- 교육은 보험회사, 보험연수원, 교육기관(금융위 고시기관)에서 실시
-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시험을 합격하거나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별표4]에 따른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 가능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제3보험 관련 업무에 등록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해당업무의 의미
- 손해보험회사,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보험·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보험·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 등 손해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은 부적격

➡ **보험설계사(유자격자* 포함)가 되려는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

* 개인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법인손해보험대리점의 소속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

※ 참고사항

- 해당 직종별 등록요건 서류 발급기관 및 관련서류
  - 손해보험회사, 금융감독원, 보험관계단체 임직원 : 해당 근무지(경력증명서)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모집경력 정보를 통해 확인
  -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
    - 개인 : 금감원(등록증), 세무서(폐업사실증명), 신분증 사본
    - 법인 : 해당법인(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영위종목 '재물, 차량' : 손보만 등록 가능
      * 영위종목 '신체, 종합' : 손보, 제3보 모두 등록 가능

- 보험설계사의 등록과정 : 등록 ⇒ 위촉 ⇒ 해촉 ⇒ 말소
  - 등록 : 등록요건을 갖추고 보험협회에 모집할 자로 등록하는 것
  - 위촉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것
  - 해촉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것
  - 말소 : 보험협회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는 것

2.4.2. 등록제한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⑤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⑨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⑩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4.3. 등록 신청서류

①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서
②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자 명단
③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등)
④ 보험설계사(개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⑥ 미성년자 추가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매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발급된 것) 1매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매
  ※ 법정대리인이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필요

※ 참고사항

- 미성년자 중 기혼자는 성년으로 보며, 이 경우 미성년자 추가서류는 기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설계사 등록은 개별적으로는 처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 협회로 신청하여야 함

근거법령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 4. 17., 2020. 3.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 6., 2018. 6. 5.〉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2.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가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이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3호서식의 보험설계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4-3조(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 ① 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영 제27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면제한다.[단서 신설, 2015. 1. 20. 개정, 2018. 6. 5.]
1.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가. 보험설계사 : 협회
   나. 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

3.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신설 2014. 4. 15.〉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 나목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④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 나목에 따라 손해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손해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 나목에 따라 제3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경력에는 운전기사·교환원·경비·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⑦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

2.5. 보수교육

2.5.1. 교육 주체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2.5.2. 교육 의무

○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최초등록일(현재 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하여야 함

※ 법인이 아닌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도 동일한 교육의무 부여

〈 보수교육 시작일 산정방법 〉

- 손·생·제3보 자격 등록일이 동일하지 않을 때 : 자격 등록일과 관계없이 현재 소속된 기관(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에 최초 등록된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일자
- 교차설계사 : 전속설계사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일자

※ 보수교육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대한 교육을 모두 이수할 필요

〈 보수교육 시작일 예시 〉

- 2020년1월1일 홍길동보험대리점에 손해보험자격으로 보험설계사 등록, 2020년6월1일 생명보험자격 추가 취득, 2021년 1월 1일에 제3보험자격 추가 취득
  → 홍길동보험대리점에 등록된 날인 2020년 1월1일에서 2년이 경과한 2022년1월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제3보험 모두 보수교육 이수 필요
- 2020년6월1일 홍길동손해보험회사에 전속설계사로 등록(손해보험·제3보험), 2021년1월에 홍길동생명보험회사에 교차설계사로 등록(생명보험)
  → 홍길동손해보험회사에 전속설계사로 등록된 2020년 6월1일에서 2년이 경과한 2022년6월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제3보험 모두 보수교육 이수 필요

2.5.3. 교육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및 제3호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함

☞ 18~19 페이지 참조

2.5.4.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총 8인)

-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 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 보험대리점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 보험중개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 주요업무

- 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 외부교육 기관, 외부 강사 지정 및 취소
- 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등

근거법령

《보험업법》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

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

③ 보험회사등은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 2021. 6. 1.〉

④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0. 1., 2021. 6. 1.〉

⑤ 보험협회는 매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불완전 판매 건수 등 보험협회가 교육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

⑥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31., 2019. 10. 1.〉 [본조신설 2011. 1. 24.]

《보험업감독규정》

제4-2조(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모집종사자 교육을 위해 영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단체(이하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②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 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 보험대리점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6. 보험중개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의 장은 제2호의 위원이 1년씩 담당한다. [개정, 2020. 3. 18.]
④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2. 외부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3. 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업무
⑤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내용을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① 영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영 별표4 제1호가목1), 2) 및 5)세목과 제3호가목1)·2)세목의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영 별표4 제1호 가목1), 2) 및 5)세목과 관련한 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② 영 별표4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1.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2.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3.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4.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5. 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 시간 : 5시간 이상
6. 외부 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③ 영 제2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영 별표4 제2호에 따른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은 제1항의 요건에 따른 교육 기관 및 강사가 실시하여야 하며, 1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6. 말소

2.6.1. 신청 주체

신청주체	신청방법
보험회사	협회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본 인	협회 방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대리인을 통한 말소신청 불가
(본인사망시) 상속인 또는 보험회사	(상속인) 협회 방문 or 보험회사로 신청 (보험사) 협회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통한 신청

2.6.2. 신청 절차

□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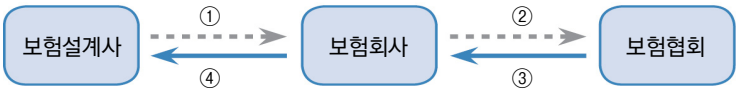

①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말소의사를 표시하고 관계서류 제출
② 보험회사는 위촉계약 해지 후 보험협회로 말소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말소여부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말소여부를 보험설계사에게 통보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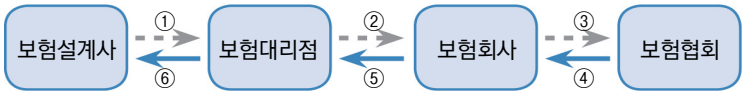

①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에 말소의사를 표시하고 관계서류 제출
② 보험대리점은 위촉계약 해지 후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설계사 말소 대행 요청
③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말소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④ 보험협회는 말소여부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말소신청 결과 통보
⑥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에게 말소여부 통보
※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는 소속중개사에서 보험협회로 수동심사 말소 신청을 하고, 협회는 말소여부 심사후 그 결과를 소속중개사에 유선통보

2.6.3. (본인) 직접 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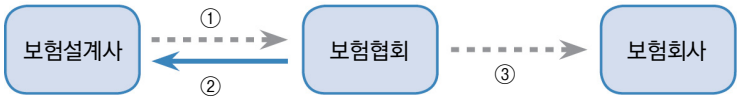

① 보험설계사 본인이 직접 협회를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nia.or.kr)에 접속하여 말소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② 보험협회는 관련서류 심사 후 말소처리
③ 보험협회는 말소업무 처리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2.6.4. 신청 서류

보험회사를 통한 말소	협회를 통한 직접말소
○ 등록말소 신청자 명단 ○ 개인 사망의 경우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인 해산의 경우 : 해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소멸의 경우 :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직접말소 신청서 ○ 해촉증명서 또는 내용증명우편 *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말소가능 (예시 : 1일에 내용증명 발송시 11일부터 말소 신청 가능) ○ 신분증(인터넷 말소는 전자인증)

※ 참고사항

- 직접말소 제출서류 중 해촉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함
- 내용증명우편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이 분명치 않은 경우 효력이 없음
- 내용증명우편의 수신자는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본사,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소속 대리점의 본사 소재지로 하여야 함
- 소속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내용증명우편 발송 후, 이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경우에는 먼저 발송한 업무폐지 내용증명우편은 효력이 없음

2.7. 기타 변경사항

2.7.1. 변경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2.7.2. 신고 절차

□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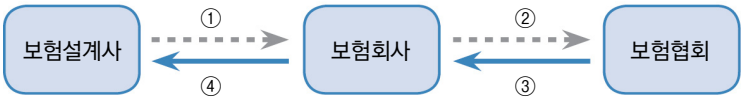

① 보험설계사는 변경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기타 변경사항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변경여부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변경사실을 통보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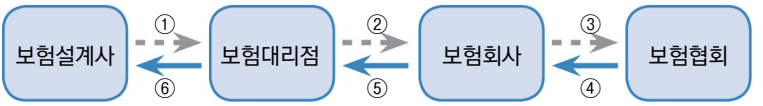

①~④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동일
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기타 변경사항 결과를 통보
⑥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에게 변경사실을 통보

2.7.3. 신고 서류

① 보험회사의 변경신고서 (전산처리시설로 제출시 생략)
② 초본(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용 확인 가능용),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근거법령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Q & A

Q-1 보험모집종사자 등록 유효기간

구 분	신규등록 교육	경력자등록 교육
보험설계사	연수과정(시험+등록교육)이수 후 1년	경력자 교육이수 후 1년
개인보험대리점	연수과정(시험+등록교육)이수 후 2년	경력자 교육이수 후 2년

〈등록 유효기간 관련 적용 사례〉

2018년 1월 1일 설계사 등록교육 이수, 2018년 6월 1일 설계사 자격시험 합격, 2018년 7월 1일 설계사 등록. 2018년 10일 1일 설계사 등록교육 새로 이수, 그 후 설계사 등록을 말소하고 2019년 9월 1일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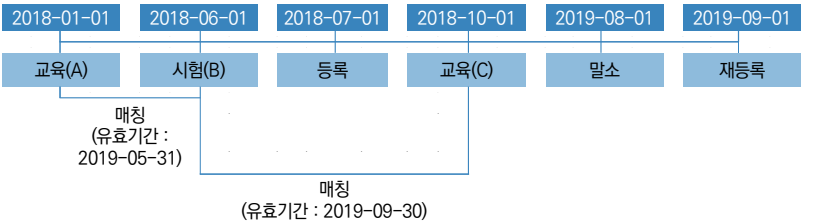

☞ 교육(A)와 시험(B)의 매칭 유효기간 : 2019-05-31
☞ 시험(B)와 교육(C)의 매칭 유효기간 : 2019-09-30

※ 등록 유효기간 해석 관련 금융위 유권해석

법령해석 회신문

질의 요지	□ 「보험업감독규정」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자격획득의 기산점 해석 – '교육이수'와 '시험합격' 두 요건 중 하나가 갱신되면,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자격의 기산점도 갱신되는지 여부
회답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그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새로이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유	□ 영 별표 3 제1호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의 하나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1항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① 영 별표4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함)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에 합격하거나, ②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요건으로서 교육이수와 시험합격간의 선·후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교육이수 후 1년 내 시험합격 또는 시험합격 후 1년 내 교육이수 요건을 충족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경우 보험설계사 등록으로 인하여 시험합격 또는 교육이수 요건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①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새로이 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②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새로이 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보험관계 업무의 경력 인정 (감독규정 제4-3조)

① 경력 인정기관

- ○ 손해보험회사,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 단체에서 보험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보험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 운전기사·교환원·경비·안전관리업무 등 손해보험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부적격

② 경력 인정기관별 자격 증빙서류

경력 인정기관	자 격 증 빙 서 류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경력증명서
개인손해사정업자, 개인보험계리업자, 개인보험중개사	금감원(등록증), 세무서(폐업사실증명), 신분증 사본
개인보험대리점	손해·생명보험협회가 보유한 모집경력 정보로 확인
손해사정업자/보험계리업자 (법인)소속 종사자	경력증명서(업무명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손해·생명보험협회가 보유한 모집경력 정보로 확인

Q-3 손해사정업·보험계리업의 단순 업무보조자 경력 인정여부

- ○ 손해보험관계 업무는 실제 보험영업활동, 보험실무 등 손해보험과 관계된 직접적인 업무활동을 의미함
- ○ 손해사정업/보험계리업에서 단순 업무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은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의 보조인은 제외)
- ○ 따라서, 모집종사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Q-4 비상임 임원 또는 상임 단순임원의 경력 인정여부

- ○ 보험관계 업무는 실제 보험영업활동, 보험실무 등 보험과 관계된 직접적인 업무활동을 의미함
- ○ 보험회사, 손해사정업, 보험계리업,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법인에서 모집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단순 임원 또는 업무보조에 종사한 경력은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 따라서, 모집종사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Q-5 미성년자의 등록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모집종사자 등록을 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모집종사자 등록이 가능함
- 미성년자가 모집종사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관련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자이거나 보험업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면 미성년자는 등록할 수 없음

○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성년의제[成年擬制])하여 단독으로 모집종사자 등록을 할 수 있음
-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모집종사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관련 서류 외에 혼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Q-6 외국인의 모집종사자 등록 가능 여부

○ 모집종사자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인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하지 않음

○ 따라서, 외국인도 모집종사자로 등록하여 모집에 종사할 수 있음

○ 다만, 외국인이 모집종사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함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으로 인한 귀화(F6)

Q-7 보험설계사의 보험대리점 겸업 가능여부

○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Q-8 보험설계사 등록의 효력이 시작되는 기준 시점

○ 보험설계사 등록이 수리된 날 0시부터 말소의 수리일 24시까지임

Q-9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사유

구 분	등록취소 사유	근거규정
보 험 설계사	[등록취소]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86①항
	[6월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86②항

※ 금융위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협회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개인대리점)와 해당 보험설계사가 근무 중인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공문으로 등록취소 처분 내용을 통보

Q-10 등록 관련서류의 허위제출

○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등록이 취소됨

○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됨

〈경력 기준〉

Q-11 등록자격별 증명서 발급

○ 원칙 : 시험 시행기관, 경력 해당 회사 및 기관에서 발급

발급 대상자	발급기관	증명서 종류
보험설계사시험 합격자	보험협회	합격증
보험대리점시험 합격자	보험연수원	합격증
보험회사 임직원	소속회사	경력증명서
유관기관 임직원	해당기관	경력증명서
보험대리점(설계사 포함) 경력자		(협회) 전산확인

○ 예외

- 파산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 예금보험공사
- 파산한 보험회사의 모집종사자(대리점, 설계사) : 보험협회

Q-12 모집종사자 경력기간 계산방법

○ 모집종사자로 근무한 경력기간은 동일 영위업종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함

- 손해보험설계사(대리점) 등록요건 심사시 손해보험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합산하여 계산

경력인정 구분	경력 기간	경력인정기간
○○화재해상보험(주) 사원	210일	750일 (2년 이상)
손해보험회사 설계사	270일	
손해보험대리점 설계사	270일	

○ 모집종사자가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경력기간

- 보험설계사(대리점 설계사 포함) : 해당 업종별 보험관계경력 1년(등록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이상

- 보험대리점(대리점 유자격자 포함) : 해당 업종별 보험관계경력 2년(등록신청일로부터 4년이내) 이상

Q-13 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보험업무 종사경력 인정여부

○ 해당 보험대리점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유자격자가 보험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Q-14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경력 기산시점

○ 보험설계사 : 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관계업무 종사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보험대리점 :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보험관계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일 것

Q-15 모집에 종사하지 아니한 보험대리점 임원의 경력인정 여부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설계사로 해당 보험업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하므로 모집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보험대리점 임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기타 사항〉

Q-16 모집종사자 연수 및 시험 시행기관

○ 모집종사자별 시험 시행기관

구 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교육 기관	• 보험연수원 • 보험회사 •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1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보험관련 학과가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한 기관	
시험 시행기관 (합격증 발급)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Q-17 개인보험대리점의 설계사 고용 가능여부

○ 개인대리점도 설계사를 고용하여 보험모집업무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험협회에 등록 후 보험모집업무 수행이 가능함

Q-18 보험설계사의 보험대리점 겸업 가능여부

○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Q-19 손해보험설계사의 생명보험설계사 겸직 가능 여부

○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 '08. 8. 30 이후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이 허용되어 손해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설계사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함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이 겸업대리점인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는 손해보험설계사와 생명보험설계사 겸직이 가능함

Q-20 보험설계사 등록의 효력이 시작되는 기준 시점

○ 보험설계사 등록이 수리된 날 0시부터 말소의 수리일 24시까지임

Q-21 보험설계사 말소 신청방법

○ 보험설계사 말소신청은 소속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협회로 신청하는 방법과 보험설계사 본인이 직접방문(또는 인터넷신청) 보험협회에 말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Q-22 보험설계사 본인이 직접말소(협회 방문 및 인터넷) 방법

○ 보험설계사를 말소하려는 자가 보험협회 본부나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음 (대리신청 불가)

○ (협회내방) 제출서류

① 직접말소 신청서 (협회내 비치)

② 신분증

③ 해촉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속회사에게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우편*)

○ (인터넷이용)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해촉증명서 또는 내용증명우편

- 진행방법 : ①단계(서류접수)+②단계(말소신청) 모두진행

① 서류접수방법 : • 해촉증명서 (업로드, 우편, 팩스, 人편)
• 내용증명우편 (우편, 人편)

② 말소신청방법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모집종사자정보/ 인터넷말소신청(본인인증)

* 〈내용증명우편〉

• 반드시 본인소속회사 본사로 송부해야 함(지점 또는 원수사 송부 불인정)
• 말소처리일은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10일 경과 후부터 가능
• 사본 불인정

Part 3

보험대리점

Part 3 보험대리점

3.1. 분류 및 영업범위

3.1.1. 분 류

① 영위 종목별 분류

손해보험대리점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생명보험대리점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제3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

② 유형별 분류

전속대리점	1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비전속대리점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회사 수는 제한 없음

③ 영위 업종별 분류

전업대리점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회사 중 1개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겸업대리점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제3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및 제3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 및 제3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 실무적으로 겸업대리점이라 함은 '1개의 보험대리점'이 손·생보대리점(제3보험대리점 겸업 여부 불문)을 겸업하는 경우를 의미

④ 운영 주체별 분류

개인대리점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
법인대리점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3.1.2. 영업 범위

① 손해보험대리점 :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보증보험, 기타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 화재보험, 특종-책임, 특종-상해-여행, 특종-상해-기타, 특종-종합, 특종-권리, 특종-기타, 보증보험(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에 한한다)

②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

③ 제3보험대리점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근거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 6., 2018. 6. 5.〉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1. 6., 2018. 6. 5.〉

1. 생명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3. 제3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3.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보험대리점은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5.〉

1.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제공·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2.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3. 단체보험계약(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에게 제공할 것
가.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나.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 제2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기회에 관한 사항
라.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재화·용역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간에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것
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나.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5.〉 [본조신설 2011. 1. 24.]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의2(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의 영업범위) 영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및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그 세부적인 보험종목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1. 20]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①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6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7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4-6조제1항단서에 따라 등록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제4-6조제

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그 대주주·특수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의3(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 ① 감독규정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29와 같다.〈개정 2018. 7. 10.〉

②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취급가능한 보험상품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4. 17., 개정 2018. 7. 10.〉

[별표 29]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2-10조의3 관련)

가. 화재보험
나. 특종-책임
다. 특종-상해-여행
라. 특종-상해-기타
마. 특종-종합
바. 특종-권리
사. 특종-기타
아. 보증보험(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에 한한다)

3.2. 등록

3.2.1.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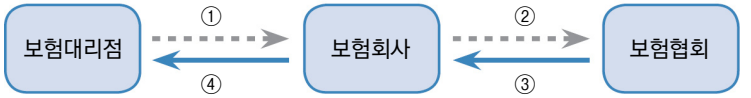

①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회사를 통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 보험대리점 등록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등록 여부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되면 보험회사로 등록증 발급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보험대리점은 영업 개시

※ 참고사항

- 보험대리점은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사용 불가
- 보험대리점은 광고 또는 보험안내자료 등에 "보험대리점" 글자를 사용하여야 함

근거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개인보험 대리점	생명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구분		등록요건
	손해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 대리점	생명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손해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제3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비고 개인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이수 후 2년으로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의7]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

2. 준수사항

나.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1) 등록번호

2) 상호 및 명칭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다.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것

라.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

3.2.2. 등록요건

① **개인보험대리점** : 다음의 (1) 또는 (2)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이수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시험 합격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시합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별표4]에 따른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 가능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해당업무의 의미
-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보험,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보험,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손해보험·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참고사항

▮ 해당 직종별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보험회사 임직원·금융감독원·보험관계단체 : 해당 근무지
-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
  - 개인 :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법인 :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해당법인 발행)

② **법인보험대리점** : 다음의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개인대리점(손해·생명·제3보험)의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유자격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2)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

근거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 6., 2018. 6. 5.〉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협회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제3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

1. 영 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임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및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이하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라 한다)의 이력서
3. 협회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담당 임원 및 법

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4. 주주명부(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명부)

③ 협회의 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7-5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6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 기재·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할 수 있다.
⑥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3.2.3. 등록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7조)

①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③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⑤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근거법령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6. 5., 2022. 4. 19.〉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가.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5.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 6. 5.〉 [전문개정 2011. 1. 24.]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 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

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정 2019. 12. 18. 〉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② 영 제3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6. 5.〉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개정, 2018. 6. 5.〉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개정 2017. 3. 22. 2018. 6. 5.〉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① 법 제91조에 의하여 등록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 제26조 및 영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모집에 종사할 자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보험대리점은 영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 다만,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6. 5.〉

④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소속 임직원 아닌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라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을 위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공제상담사 인원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4-40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6. 5.〉[[전문개정 2011. 1. 24]]

3.2.4. 신고 서류

개 인	법 인
○ 등록신청서 ○ 등록요건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단,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지사항, 이력서 ○ 등록수수료 : 1건당 2만원	○ 등록신청서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유자격자) -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단,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지사항, 이력서(모든 임원 및 유자격자)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임직원 명부(금융기관은 제외) ○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 주주명부 ○ 등록수수료 - 일반법인 : 1건당 20만원 - 금융기관 : 1건당 100만원 ※ 임직원 100인 이상인 법인(간단손해보험대리점 및 금융기관 제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10이상의 설계사 자격요건 증빙서류

※ 참고사항

- 미성년자의 경우 등록신청서류 이외에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
- 법인대리점 등록신청서류 중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 법인대리점 등록신청서류 중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및 '임직원 명부'의 '임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임원'을 기준으로 작성

근거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협회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제3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

1. 영 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임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및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이하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라 한다)의 이력서
3. 협회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담당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4. 주주명부(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명부)

③ 협회의 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7-5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6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 기재·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할 수 있다.
⑥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3.2.5. 영업보증금

① 영업보증금의 성질 : 영업개시 요건
-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음

② 예탁기관 :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

③ 예탁금액
- 개인보험대리점 : 1억원 이내
- 법인보험대리점 : 3억원 이내

※ 상기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면제

※ 참고사항
- 증권 등을 예탁한 경우, 시가변동으로 상기 금액 미달시 영업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유지를 위해 영업보증금 증액 명령 가능

④ 예탁방법
- 현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근거법령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4.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
1.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2.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3.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⑤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⑥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11. 1. 24.]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3항 및 제89조제

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 영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2.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채권형 집합투자증권〈개정 2016. 12. 29.〉
3.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공사채형 수익증권

③ 영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말하며, 영 제37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④ 영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

⑤ 영 제33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영업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를 말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영업보증금의 평가 및 평가액의 결정 등) ① 감독규정 제4-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의 평가는 한국거래소가 공시한 최근 월의 대용가격으로 한다.〈개정 2005.4, 2009. 12. 21., 2011. 1. 19.〉

② 감독규정 제4-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평가는 당해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발행기관이 평가하여 확인한 금액(잔고증명서)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2011. 1. 19.〉

③ 감독규정 제4-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평가는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으로 하고, 영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의 평가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2011. 1. 19.〉

④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3.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3.3.1. 신고 절차

○ 일반보험대리점 신고신청(3.2.1)과 동일

3.3.2. 등록 요건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이수자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해야 함

근거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 6., 2018. 6. 5.〉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6. 5., 2022. 4. 19.〉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가.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5.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 6. 5.〉 [전문개정 2011. 1. 24.]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 ① 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영 제27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면제한다.[단서 신설, 2015. 1. 20. 개정, 2018. 6. 5.]

1.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가. 보험설계사 : 협회
   나. 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
3.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신설 2014. 4. 15.〉

②~③ 생략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 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정 2019. 12. 18. 〉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② 영 제3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6. 5.〉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개정, 2018. 6. 5.〉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개정 2017. 3. 22. 2018. 6. 5.〉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① 생략

②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보험대리점은 영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 다만,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6. 5.〉

④ 생략

제4-40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

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6. 5.〉[[전문개정 2011. 1. 24]]

제4-4조의2(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의 영업범위) 영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및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그 세부적인 보험종목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1. 2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의3(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 ① 감독규정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29와 같다.〈개정 2018. 7. 10.〉

②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취급가능한 보험상품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4. 17., 개정 2018. 7. 10.〉

[별표 29]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2-10조의3 관련)

가. 화재보험
나. 특종-책임
다. 특종-상해-여행
라. 특종-상해-기타
마. 특종-종합
바. 특종-권리
사. 특종-기타
아. 보증보험(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에 한한다)

3.3.3. 신고 서류

개 인	법 인
○ 등록신청서 ○ 고지사항, 이력서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 (협회 지침 별지서식 제31호) ※ 등록수수료 : 1건당 2만원	○ 등록신청서 ○ 고지사항, 이력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유자격자)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 주요주주의 명부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 (협회 지침 별지서식 제31호) ※ 등록수수료 : 1건당 20만원

※ 참고사항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신청시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 간단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 확인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임직원 명부 제출 생략
- 법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보험대리점업’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대리점 등록 가능

Q & A

Q-1 보험대리점 관련업무 등록(신고)기관

등록(신고)기관	보험협회
등록·신고사항	등록, 겸업 지점 설치, 지점 폐쇄 계약 체결, 계약 해지 업무 폐지 임원 및 유자격자 자격 변경 기타 변경신고* 등록증 재발급 신고

* 기타 변경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대리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상호

Q-2 보험대리점의 상호 사용제한

① 근거규정 및 내용

관련 법률	내 용
보험업법 §8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의 보험회사 표시글자 사용금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의7]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 사용금지
상법 §19	회사상호에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임을 표시
상법 §20	회사가 아니면 회사 상호 사용금지
상법 §23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금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2	신용정보업자 외에 신용정보·신용조사·신용평가 등 사용금지
은행법 §14	은행 명칭 사용금지

관련 법률	내 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38 ⑦	신탁업자임을 표시하는 문자 사용금지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예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38 ②	증권업을 표시하는 문자 사용금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1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 사용금지
상호저축은행법 §9 ②	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무진회사·서민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51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 사용금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38 ④	자산운용·투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 사용금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5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금융/파이낸스/자본/캐피탈/신용/크레디트/투자/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자산관리/펀드/보증/팩토링/선물)

② 개인대리점의 상호 제한사항

- "법인" 문자 사용금지
- 상법상의 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사용금지

※ 보험대리점 상호명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확인가능

Q-3 2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통한 동시 신규등록 가능 여부

○ 동일인이 동일한 등록일자에 2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험대리점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2개 보험회사 모두 등록신청이 거부됨

Q-4 신규등록과 신규겸업의 동시신청 가능여부

○ 신규등록 신청 : 1개 보험회사를 통하여 최초로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
○ 신규겸업 신청 : 손해보험(생명보험) 모집업무를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이 타업권인 생명보험(손해보험) 모집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타업권의 업종을 등록 신청하는 것
○ 보험대리점은 신규등록시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신규등록 이후의 모든 신고행위는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됨
○ 따라서, 신규등록과 신규겸업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규겸업을 신청할 수 있음

Q-5 보험대리점을 영위하기 위한 정관의 목적사업 표기사항

○ 회사는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의 목적사업에는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열거해야 함
○ 따라서, 정관의 목적사업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함
○ 보험대리점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험대리점업”으로 신고하여야 함(보험업, 보험중개업 등은 보험대리점업과 전혀 다른 영업범위에 해당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함)
○ 보험대리점 등록시 정관은 제출서류가 아니므로 정관의 목적사업은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을 보고 판단함

Q-6 보험대리점 등록절차

① 개인보험대리점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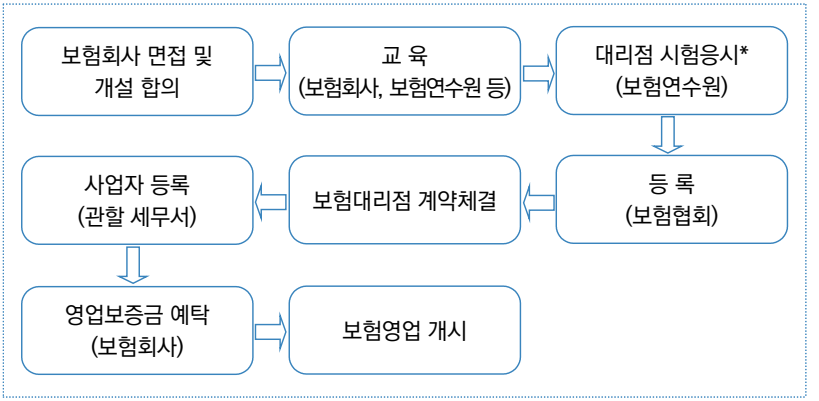

* 전속대리점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절차이며, 보험모집경력이 2년 이상(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이면 대리점 시험응시는 필요없음(경력자등록교육 이수 필요)

②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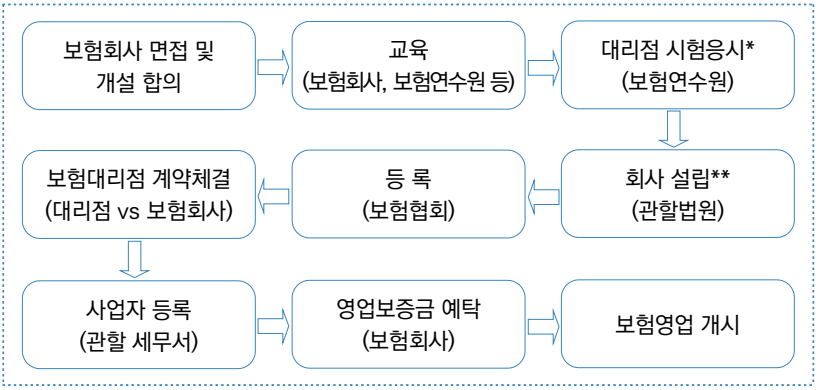

* 전속대리점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절차이며, 유자격자가 보험모집경력이 2년 이상(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이면 대리점 시험응시는 필요없음(경력자 등록교육 이수 필요)

** 회사설립은 상법상의 회사 설립기준에 따름(세부사항은 관할기관에 문의)

Q-7 임직원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방법

○ 등록요건
-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절차와 동일함
- 임직원의 1/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예시〉
■ 업태 : 전자부품 도매업
■ 임직원수 : 1,200명
■ 계약직수 : 800명
■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종 :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종별로 유자격자 1인 이상이 필요(영위 업종별 한사람이 중복하여 자격을 갖추어도 됨)
- 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자 200명 이상 필요
  → 임직원 1,200명 + 계약직 800명 = 2,000명의 1/10 = 200명
  ※ 200명은 유자격자를 제외한 인원이며, 영위 업종별 한사람이 중복하여 자격을 갖추어도 됨
  (한사람이 유자격자 충족요건과 보험설계사 충족요건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단,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해당 규정 적용이 제외되어 임직원수와 관계없이 유자격자 1명만 있으면 대리점 등록요건 충족

Q-8 보험대리점 등록의 효력 발생시점

○ 효력 발생시점 : 등록이 수리된 날 0시
○ 효력 상실시점 : 업무폐지의 수리일 24시

Q-9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 영업보증금은 보험대리점이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으면 영업을 개시할 수 없음
○ 영업보증금은 개인 1억원(법인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하며,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음
○ 영업보증금 예탁기관 : 계약체결된 보험회사(보험회사가 다수인 경우 각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함)
○ 영업보증금의 예탁횟수 : 영업보증금은 현금일 경우 영업기간 동안 1회만 예탁하면 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갱신하여야 함

Q-10 법인대리점의 임원 및 유자격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점 등록 가능여부

○ 법인대리점의 임원 및 유자격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점 등록은 불가능함
- 등록신청서 및 등기부등본에 신고된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은 거부 처리됨
- 유자격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등록신청시 결격사유자의 고지사항 허위작성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므로 거부처리됨

Q-11 보험대리점과 등기부등본상의 상호일치 여부

○ 보험대리점과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는 항상 일치하여야 함

Q-12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사유

구 분	등록취소 사유	근거규정
보 험 대리점	[등록취소]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법§88①항
	[6월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법§88②항

※ 금융위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협회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개인대리점)와 해당 보험설계사가 근무 중인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공문으로 등록취소 처분 내용을 통보

3.4. 겸업

3.4.1.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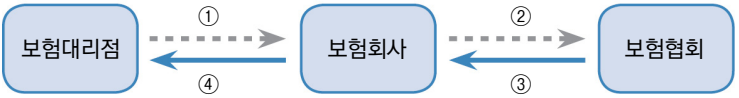

① 손해보험의 모집과 생명보험의 모집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원하는 타 업종의 보험회사에 겸업신고 신청서류 제출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겸업신고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겸업 여부 심사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심사결과 통보

3.4.2. 신고 요건

①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 업종의 등록요건 충족

〈예 시〉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생명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보험대리점이 손해보험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

② 법인대리점의 경우 해당 유자격자를 1인 이상 둘 것

〈예 시〉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보험 유자격자 1인 이외에 생명보험 유자격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함(동일인이 생명보험 유자격자이면서 손해보험 유자격자도 될 수 있음)

※ 유자격자의 요건 : "3.2.2.2. 법인보험대리점" 참조

③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

3.4.3. 신고 서류

① 겸업신고서

②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 법인 및 등록신청인(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유자격 포함) 고지사항
- 임원 및 유자격자 현황 및 임직원 명부(법인)
- 주주명부(법인)
- 등록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전산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근거법령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7. 생략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다.〈신설 2016. 9. 27.〉
③ 보험회사는 별표 5의7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른 표준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수수료, 비용,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지원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 9. 27.〉
④ 보험회사가 대리점계약을 개인보험대리점과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중에 대리점 위임업무 등 계약사항의 일부 변경시의 기간계산은 당초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 9. 27.〉
⑤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
⑥ 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개정 2016. 9. 27.〉
1.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16. 9. 27.〉

Q & A

Q-52 전업대리점의 겸업대리점 전환 가능여부

○ 손해보험만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을 겸업함에 있어 제한이 없음 (생명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은 갖출 필요)

* 보증보험 전업대리점이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신고'절차를 밟아야 함

3.5. 지점설치

3.5.1. 신고 절차



① 지점을 설치코자 하는 법인대리점은 지점설치 신청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지점설치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지점설치 여부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지점설치 신고결과를 통보

※ 지점설치에 관한 자세한 업무처리 절차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매뉴얼」 참고

3.5.2. 신고 요건

① 지점의 의미
-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
- 상법상 회사의 지점에 해당 → 지점 등기 필요

② 지점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유자격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 유자격자의 요건 : "3.2.2.1. 개인보험대리점" 참조

〈예시〉
본점이 겸업대리점이라 하더라도 지점에는 생명보험유자격자만이 존재할 경우 당해 지점은 생명보험만을 모집할 수 있음

③ 지점의 유자격자는 보험대리점이 두어야 할 유자격자의 수에 미포함

3.5.3. 신고 서류

① 지점설치 신고서
② 지점 유자격자 고지사항, 이력서, 자격증빙서류

③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물품·설비목록, 고용계약서, 지점운영기준 등

근거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①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점은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동일주소지에 2개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인수·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의 회사로 하며,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⑤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2.〉

1. 지점 신고 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3. 유자격자의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의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 및 폐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3. 2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지점의 설치) ① 법인보험대리점이 감독규정 제4-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② 보험대리점의 지점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유자격자(영 별표 3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설계사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1. 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 제30조제2항 별표 3제2호 법인보험대리점 가목의 규정에 따라 두어야 할 유자격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 19.〉

3.6. 지점폐쇄

3.6.1.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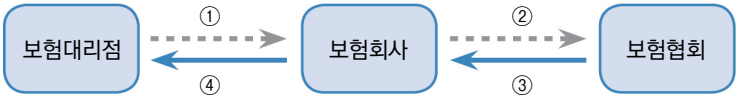

① 법인대리점은 소속 지점이 지점폐쇄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지점폐쇄 신청서류를 폐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제출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지점폐쇄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지점폐쇄 여부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지점폐쇄 신고결과를 통보

3.6.2. 지점폐쇄 사유

① 지점설치 신고 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② 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③ 유자격자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3.6.3. 신고 서류 : 지점폐쇄 신고서

근거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①~④ 생략
⑤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2.〉
1. 지점 신고 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3. 유자격자의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의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 및 폐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3. 2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지점의 폐쇄) 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② 감독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점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감독규정 제4-11조의2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7. 3. 23.〉

Q & A

Q-1 지점폐쇄시 소속 유자격자 처리방법

○ 지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지점 소속 유자격자들은 지점폐쇄일에 해당 법인대리점 본점으로 지점이동 처리되며, 지점 소속 유자격자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자격자 말소신청을 절차를 거쳐야 함

Q-2 지점폐쇄 없이 지점 소속 유자격자 전부 말소 가능여부

○ 지점을 폐쇄하지 않고 지점에 소속된 유자격자를 전부 말소할 수 있으나, 2개월 이내에 유자격자를 충원하지 않으면 그 지점을 폐쇄하여야 함

Q-3 전업보험대리점의 지점이 겸업유자격자 1인으로 겸업 가능여부

○ 계약체결은 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지점이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보험대리점 본점이 전업대리점이면 지점도 해당 보험업권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의 판매만 가능하므로 겸업유자격자를 신고할 수 없음
○ 지점이 겸업을 하려면 보험대리점 본점의 겸업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점은 겸업에 필요한 유자격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함

Q-4 개인대리점의 지점 설치 가능여부

○ 지점의 설치는 법인대리점만 가능하며, 개인대리점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음

Q-5 본점과 주소지를 달리한 장소에서 지점설치 신고없이 영업 가능여부

○ 지점은 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임

○ 본점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장소는 “지점”으로서 신고 후 영업행위가 가능함

○ 지점에는 유자격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지점설치 신고없이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

3.7. 계약체결

3.7.1. 신고 절차



① 계약체결을 원하는 보험회사에 계약체결 신청서류 제출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계약체결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계약체결 여부 심사 후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계약체결 신고결과를 통보

※ 참고사항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동종의 다른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함

3.7.2. 신고 서류

일반 보험대리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 계약체결 신고서 ○ 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등기부등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체결 신고서 ○ 보험대리점 계약체결 증명서 (판매제휴 계약서 등) 사본 1부

※ 참고사항

보험회사가 개인보험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거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다.〈신설 2016. 9. 27.〉

③ 보험회사는 별표 5의7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른 표준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수수료, 비용,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지원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 9. 27.〉

④ 보험회사가 대리점계약을 개인보험대리점과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중에 대리점 위임업무 등 계약사항의 일부 변경시의 기간계산은 당초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 9. 27.〉

⑤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

⑥ 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개정 2016. 9. 27.〉

1.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16. 9. 27.〉

Q & A

Q-1 보험대리점 계약체결

○ 개인보험대리점이나 법인보험대리점 모두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등록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계약체결에 제한이 없음
- 다만, 계약체결은 사적자치에 해당하므로 계약자 일방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없음

Q-2 전속대리점의 비전속대리점 전환 가능여부

○ 1개의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체결중인 보험대리점이 다른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체결을 통하여 비전속대리점으로 전환이 가능함

3.8. 계약해지

3.8.1.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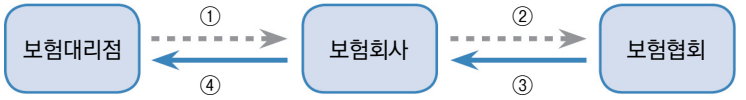

① 대리점과 보험회사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 전산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계약해지 여부를 보험대리점에 통보하고 계약관계 종료

3.8.2. 신고 서류

신청인이 대리점인 경우(임의 해지)	신청인이 보험회사인 경우(강제 해지)
○ 계약해지 신고서	○ 계약해지 신고서 ○ 해지 통지 내용증명우편 1부 (발송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고가능) * 해지대상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Q & A

Q-1 보험대리점의 협회로 직접 계약해지 가능여부

○ 보험대리점이 내용증명을 통해 보험회사에 대리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도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함
- 보험회사가 대리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해결하여야 함

3.9. 업무폐지

3.9.1. 업무폐지 구분별 신고주체 등

구 분	신고주체	신고방법
모집업무 폐지	보험대리점 대표	ㅇ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의뢰하고 보험회사가 협회에 신고 ㅇ 직접신고 (협회 내방 또는 인터넷) - 인터넷신고는 개인대리점만 가능
(개인) 본인사망	상속인	ㅇ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의뢰하고 보험회사가 협회에 신고 ※ 단, 신고시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없는 경우 협회 직접신고 가능 (직접방문만 가능 / 인터넷 불가)
(법인) 법인해산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자, 파산관재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멸	관리인	

3.9.2. 신고 절차

①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통한 업무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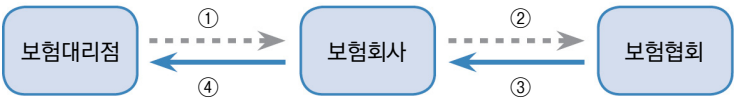

① 각 신고주체자는 계약체결 중인 각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를 구비하여 업무대행 보험회사에 등록증 원본과 같이 폐업 등 신고서 제출
※ 계약 해지된 보험회사 및 신고 대행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는 불필요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업무폐지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업무폐지 여부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업무폐지 사실을 보험대리점에 통보하고 계약관계 종료

② 협회에 직접 업무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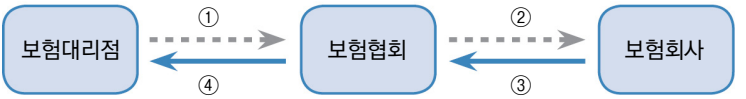

① 대리점 대표가 직접 협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nia.or.kr)에 접속하여 업무폐지 신청 및 관련서류를 제출 (단, 법인대리점은 인터넷 신청 불가)

② 보험협회는 업무폐지를 처리하고 보험회사에 통보

3.9.3. 신고 서류

구분		모집위탁 보험회사를 통한 업무폐지	협회에 직접 업무폐지
개인대리점	모집 업무 폐지	가. 폐업 등 신고서 나. ① 또는 ② ① 계약체결중인 모든 보험회사(손·생보사)의 업무폐지동의서 (신청 보험회사는 예외) ② 각 계약체결사로 발송한 업무폐지통지 내용증명 각 1부(발송일로부터 30일 경과) 다. 대리점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ㅇ 대리점 대표 본인 (내방 또는 인터넷)** 가~다. (좌 동) 라. 신분증
	본인 사망	가. 폐업 등 신고서 나. 대리점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다.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ㅇ 상속인 (내방)** 가. ~다 (좌 동) 라. 상속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마. 상속인 신분증
법인대리점	모집 업무 폐지	가. 폐업 등 신고서 나. 계약체결중인 모든 보험회사(손,생보사)의 업무폐지동의서 (폐지신청 보험회사 제외) 다. 대리점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ㅇ 대리점 대표 본인 (내방)** 가.~다. (좌 동) 라. 법인인감 마. 법인등기부등본 바. 신분증
	법인 해산 사단 재단 소멸	가. 폐업 등 신고서 나. 대리점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다. 해산 또는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ㅇ 신고인 (내방)** * 계약체결 보험사가 없는 경우 가. ~다 (좌 동) 라. 법인인감 라. 신고인 신분증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가능토록 발급 필요

근거법령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③

[전문개정 2010. 7. 23.]

Q & A

Q-1 개인보험대리점 직접업무폐지 신고 절차

○ 신청자 : 개인대리점 대표본인
○ 신청서류 : 폐업등 신고서, 업무폐지동의서 원본 또는 계약체결회사로 발송후 30일이 경과한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원본(계약체결된 보험회사 전부),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신분증
○ 신청기관
-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체결이 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손해보험협회
-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체결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모두 계약체결 :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Q-2 법인대리점의 직접업무폐지 가능여부

○ 신청자 : 법인대리점 대표본인
※ 협회에 등록된 대리점 대표,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 협회로 방문한 대표 모두 동일인 경우만 폐업처리 가능
○ 신청서류 : 폐업등 신고서, 업무폐지동의서 원본(계약체결된 보험회사 전부),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법인 등기부등본(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표시본), 신분증
○ 신청기관
-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체결 경우 : 손해보험협회
-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체결 경우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모두 계약체결 :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Q-3 직접업무폐지의 대리인 신청 가능여부

○ 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는 영업활동의 종료 및 보험대리점의 효력상실을 가져오는 중대한 행정행위이므로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음

※ 단, 개인대리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협회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업무폐지 신청 가능(관련서류는 우편으로 송부)

Q-4 해산한 법인대리점의 해산 신고시점

○ 해당법인이 해산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 신고주체 :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 신고방법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현재 모집위탁한 보험회사가 없는 경우 협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음

3.10. 임원 및 유자격자 변경(등록·자격 변경·말소)

3.10.1.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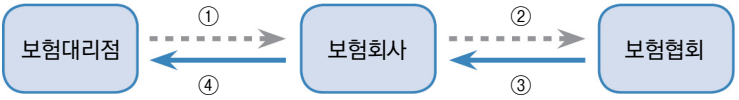

① 법인대리점은 소속 임원 및 유자격자의 변경(등록, 자격변경,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임원 및 유자격자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임원 및 유자격자 변경 신고결과를 통보

3.10.2. 신고 서류

등록 및 자격 변경	말 소
○ 임원 및 유자격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고지사항(개인) * 해당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보험회사 임직원의 유자격자 등록의 경우 자격증명 서류	○ 임원 및 유자격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임원의 경우 등기말소된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3.10.3. 임원 및 유자격자 직접말소(법인대리점 대표 직접말소는 불가능)

①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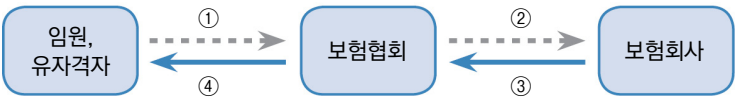

① 법인대리점의 임원 및 유자격자 본인은 “직접말소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협회를 방문하여 말소신청
② 보험협회는 당사자에게 즉시 말소 여부를 통보
③ 보험협회는 임원 및 유자격자 말소처리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② 직접말소 신고 신청서류

○ 보험대리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직접말소 신청서
- 해촉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임원인 경우 등기말소된 법인등기부등본

○ 보험대리점 대표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직접말소 신청서
- 소속 보험대리점 대표에게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우편)
-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임원인 경우 등기말소된 법인등기부등본

※ 직접말소신청서 및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야만 신청 가능
(예시. 1일에 발송한 내용증명은 11일부터 말소신청가능)

근거법령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Q & A

Q-1 법인대리점 유자격자 연령 제한여부

○ 법인대리점 유자격자는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음
○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유자격자 등록이 가능함

Q-2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지점 이동

○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가 지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지점에서 변경 후 지점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Q-3 법인보험대리점 임원 및 설계사(유자격자 포함)의 직접말소

○ 신청주체 : 보험대리점 임원 및 설계사(유자격자) 본인
○ 처리기관 :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 해당 보험업권에 속하는 보험협회에서만 업무처리 가능
○ 신청방법 : 직접내방 또는 인터넷
○ 신청서류
① 직접말소 신청서
② 보험대리점 발급 해촉증명서 또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 원본(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내용증명우편은 반드시 보험대리점 본점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야 말소접수가 가능함

③ 신분증

④ 임원말소는 임원 말소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추가

Q-4 법인보험대리점 본점 단순임원을 지점에 유자격자 등록 가능여부

○ 보험대리점 유자격자는 보험대리점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본점과 지점 동시에 소속될 수는 없음

○ 따라서, 본점에서 유자격을 추가하는 자격변경 신고를 한 이후에 임원 및 유자격자로 지점이동 신고를 하거나, 임원자격으로 지점이동 신고 후에 해당 지점에서 유자격을 추가하는 자격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Q-5 (생,3보) 자격 유자격자가 (손,3보) 자격 추가등록시 유의사항

○ 생명보험 및 제3보험 유자격을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한 유자격자가(예시. 은행에서 창구판매자로서 보험을 판매하려는 은행직원)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생명보험협회에 생명보험, 제3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유자격자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에 손해보험 유자격만 등록 신청할 경우 제3보험은 자격이 말소되어 버리므로 반드시 제3보험 자격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Q-6 법인보험대리점 단순임원의 등기부등본 등재 기록 말소방법

○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 회사이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에 대한 등재 기록은 상법상 회사의 등기임원 임명 절차에 따라 말소하여야 함

3.11. 내용 및 기타 변경사항

3.11.1. 신고 내용 : 보험대리점의 대리점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임원 및 유자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3.11.2.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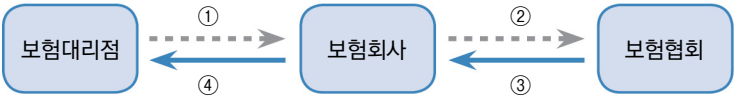

① 보험대리점은 변경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변경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기타 변경사항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변경여부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기타 변경사항 신고결과를 통보

3.11.3. 신고 서류

①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②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점명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후 등기부등본
③ 임원 및 유자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후 초본(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근거법령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8. 생략

Q & A

Q-1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 절차 : 보험회사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보험회사가 협회로 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완료

※ 제출서류 : ①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초본(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Q-2 보험대리점의 주소 변경 절차

○ 주소변경 : 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주소 변경신청 → 보험회사가 보험 협회로 신고 → 주소변경 완료

※ 제출서류 : ①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② 주소가 변경된 등기부등본(법인만)

3.12. 등록증 재발급

3.12.1.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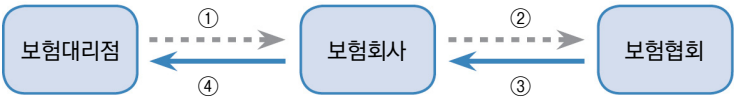

① 보험대리점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등록증 재발급 전산신청
③ 보험협회는 등록증 재발급여부 심사 후 보험회사로 등록증 재발급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게 등록증 교부

3.12.2. 신고 서류(보험회사는 전산신청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①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② 일간지에 게재된 분실공고문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확인한 사유서

근거법령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의7]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

2. 준수사항

다.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것

Q & A

Q-1 계약체결 보험회사가 없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신고를 먼저 한 후 그 보험회사를 통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계약체결 보험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등록증을 재발급하지 않음

3.13. 합병

3.13.1.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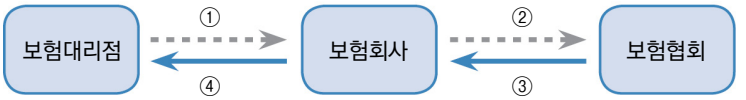

① 합병 대리점은 합병신청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법인대리점 합병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법인대리점 합병여부 심사 후 보험회사로 심사결과 통보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게 합병결과를 통보

※ 합병대리점 및 흡수대상대리점 양 쪽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병대리점만 보험회사를 통해 협회에 신고

3.13.2. 신고 서류

① 보험회사의 합병신고 공문
② 합병법인대리점이 보험회사로 제출한 합병처리 요청 공문
③ 합병 및 흡수대상 법인대리점이 각각 계약체결한 보험회사로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 각 1부
- 합병(존속) 법인대리점 및 흡수대상(소멸) 법인대리점 모두 각 계약체결사로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야만 협회 신고 가능
- 합병 요청일은 협회 신고일로부터 2주 이상이여야 함

④ 합병(해산)사실이 기재된 합병 및 흡수대상 법인대리점의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3.13.3. 처리기준 (179쪽_법인보험대리점 간 합병시 등록사항 처리기준 참조)

① 법인보험대리점이 계약체결한 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모두 있을 경우 합병처리 신고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 모두 하여야 함
② 합병처리일 기준 흡수대상(소멸)되는 대리점의 소속 설계사, 계약 체결사항은 합병대리점으로 이관 처리되며, 임원 및 지점 등록사항은 합병시 이관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등록신고 필요

Q & A

Q-1 법인대리점 합병 신고 및 합병 통보 내용증명 발송방법

○ A대리점이 B대리점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신고 및 보험회사에 합병사실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A대리점과 B대리점이 각각 협회로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합병 후 존속하는 A대리점만 보험회사로 신청하면 됨. A대리점이 계약체결한 모든 보험회사 본사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B대리점도 계약체결한 모든 보험회사 본사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해당내용 전체를 첨부하여야 함

[부적격 사례]

해당 대리점을 관리하는 GA사업부 또는 지점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 불가**(본사 소재지로 발송한 내용증명만 인정)**

합병신고 보험회사로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른 계약체결사에는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경우

☞ 불가**(계약체결한 모든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인정)**

APPENDIX 1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Appendix 1.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정 2003. 11. 18
개정 2004. 08. 30
개정 2006. 04. 17
개정 2006. 12. 01
개정 2007. 02. 23
개정 2008. 03. 19
개정 2008. 06. 24
개정 2011. 01. 24
개정 2011. 07. 24
개정 2012. 09. 01
개정 2013. 10. 17
개정 2014. 10. 01
개정 2015. 07. 01
개정 2016. 04. 01
개정 2018. 06. 05
개정 2018. 09. 03
개정 2021. 03. 01
개정 2022. 01. 01
개정 2023. 08. 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보험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관 업무에 속하는 보험설계사의 시험 및 등록(신고)업무와 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 등(이하 "모집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손해보험 모집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규정 제4-3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격시험을 말하며, 손해보험자격시험과 제3보험자격시험으로 구분한다.
2. “보험설계사”라 함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 로서 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유자격자”라 함은 보험설계사 중 규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 및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임원”이라함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을 말한다.
6. “보험중개사”란 법 제2조 제11호에따라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 및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겸업”이라 함은 보험대리점이 규정 제4-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모집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말한다.
8. “효력상실”이라 함은 보험대리점 등록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9. “이동”이라 함은 동일대리점내 유자격자의 소속 지점 변동을 말한다.
10. “보험대리점 대표”라 함은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개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자와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자(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를 말한다.
11.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및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함은 영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대리점과 이에 소속된 설계사를 말한다.
12. “보험회사 등”이라 함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를 말한다.

제3조(등록 등의 효력 기준시점) ①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임원 포함) 등록의 효력은 등록이 수리된 날 0시부터, 말소 또는 폐업(폐쇄 또는 효력상실)이 수리된 날 24시까지로 한다.

②제14조의 자격시험의 합격효력은 합격일 익일부터 발생한다.

제4조(대리인) ①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교차모집설계사 포함)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험 및 등록(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단,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 등(시험업무 제외)에 관한 업무는 보험중개사를 대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②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겸업신고는 모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등 기타 신청사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한다.

③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및 임원(대표 제외)의 말소는 본인이, 보험대리점 폐업은 대리점 대표가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부적격자의 관리) 협회의 장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모집종사자의 명단을 등록 부적격자로 구분하여 등록 부적격자 명부(별지서식 제1호)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 부적격자 명부를 전산처리 시설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등록취소의 요청) 협회의 장은 보험설계사가 법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험대리점이 법 제8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장 시 험

제7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매월 실시하며, 시험일자, 지역,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시험일정 및 시험결과 통보) ①협회의 장은 시험일정을 매 분기개시 10일전까지 각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②시험일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해당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협회의 장은 시험시행일 익일(시험시행일 익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마지막 날의 익일)까지 시험결과를 각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각 보험회사에 그 사유와 시험결과 통보 일정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제9조(시험응시 및 관리감독) ①응시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휴대하고 응시하여야 한다.

②시험의 공정성과 시험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험감독자를 2인 이상 두며, 감독자는 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감독자는 시험장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 등 시험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시험문항당 1분 이상으로 하며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시험문제의 출제 및 사용) ①손해보험자격시험문제는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일반교양에 관하여 출제한다.

②손해보험자격시험문제의 출제는 25문항 이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문제유형을 2가지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응시신청)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수험 신청서 1매(별지서식 제2호)
2. 수험신청자 명단 1부(별지2서식 제4호).

②수험신청은 시험시행 3일전 까지 전산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제13조의 응시거부사유가 없는 응시자에 한하여 신청을 수리하고 수험표〈별지서식 제3호〉를 교부한다.

제13조(시험응시의 거부) ①협회의 장은 제12조의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시험응시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의해 별표1의 처분을 받고, 제재중에 있는 자
3. 제12조 제3항의 수험표를 미지참한 경우

② 그밖에 시험응시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험합격기준 등) ①시험의 합격기준 및 합격자에 대한 자격유효기간은 규정 제4-3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3 제1호의 기준으로 한다.

②응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무효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시험응시거부자가 시험에 응시한 경우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채점할 수 없는 경우
3. 전산채점(OMR, OCR 등)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경우
4. 답안지 기재사항(주민번호, 문제유형)을 오기 또는 누락한 경우

5. 신청한 시험일자 또는 지역과 다르게 시험에 응시한 경우

③ 전산채점시 이중표기 등으로 정답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답안을 정정한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한다.

제15조(합격증 교부) ①협회의 장은 제7조의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소속보험사의 신청에 의해 〈별지서식 제5호〉의 합격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합격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회사별 합격자 명단에 수료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시험부정행위) ①협회의 장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별표 제1호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

②별표 제1호의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거 문책의뢰를 통보받은 해당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협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7조(제3보험자격시험)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3보험자격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보험"은 "제3보험"으로 본다.

제3장 보험회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 등

제18조(등록의 신청) ①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서(별지서식 제6호 및 제7호)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서식 제8호)
3. 보험설계사 등록 신청자 명단(별지서식 제9호)
4. 영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②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매(별지서식 제10호)
2.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발급된 것) 1매
3.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매

제19조(등록의 거부) 협회의 장은 제18조의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법 제8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 제2항, 규정 제4-9조 제2항, 규정 제4-20조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20조(등록의 심사) 협회의 장은 제18조의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 영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
2. 제19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3.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상이 여부

제21조(등록의 수리) ①협회의 장은 제18조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서식 제11호〉에 의한 보험설계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계사 등록부는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서식의 규격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9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의 말소신청) ①보험회사는 제21조에 의해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모집 업무를 폐지한 때
2. 본인이 사망한 때

②제1항에 의해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서식 제12호〉에 의한 보험설계사 등록 말소신청자 명단(이하 "말소신청자명단"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말소신청자명단을 전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등록된 자가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말소신청(이하 직접말소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한다.

1. 직접말소 신청서 (별지서식 제13호) 1부
2. 소속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우편) 1부 또는 해촉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④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서류를 협

회에 제출(신청서, 신분증 제외)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제3항제2호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성명, 주민번호 등 기재사항이 분명치 않은 경우
2. 발송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소속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우편)를 발송한 이후에 이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내용증명우편)를 한 경우

⑥제3항에 의한 직접말소 신청은 신청일 당일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에게 모집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야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제24조(등록의 말소) ①협회의 장은 제23조 제1항에 의한 등록말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등록된 자의 말소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21조 제1항의 보험설계사등록부에서 말소하고, 말소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한다. 단, 말소자 명단을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장 보험대리점 등록 등

제1절 보험대리점의 신규등록·겸업신고

제25조(등록의 신청) ①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별지서식 제14호)
2. 규정 제4-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
   나. 등록신청인(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유자격자 포함) 고지사항(별지서식 제15호)

다. 주주명부

라. 영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3. 임원·유자격자 명부 및 임직원 명부(법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영 제30조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
4.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서식 제 31호)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한함)

②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 또는 소속 유자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6조(등록의 거부) 협회의 장은 제25조의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 · 제공 · 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27조(등록의 심사) ①협회의 장은 제25조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 영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제26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이상 여부

②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보완하여 등록을 수리 할 수 있다.

③협회의 장은 제1항의 등록심사를 위해 제25조에서 규정한 제출서류외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겸업의 신청) ①보험대리점이 제2조 제7호의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겸업신청서(별지서식 제16호)
2. 제25조 제1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②겸업신청에 대한 등록심사 및 처리기준은 영 제27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등록의 수리 등) ①협회의 장은 제25조 및 제28조의 신청사항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서식 제17호〉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처리결과 및 등록증(별지서식 제30호)을 신청을 대행한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전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는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서식의 규격 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③협회의 장은 제25조에 의해 등록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폐쇄

제30조 (지점의 설치) ①법인대리점이 규정 제4-11조의2에 의한 지점을 설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보험대리점
   가. 지점설치신청서(별지서식 제18호)
   나. 지점 유자격자 고지사항, 이력서, 자격증빙서류
   다. 등기부등본 등 규정 제4-11조의2의 지점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가. 지점설치신청서(별지서식 제18호)
   나. 지점 유자격자 고지사항,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자격증빙서류

②협회의 장은 해당 지점이 감독규정 제4-11조의2의 지점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하며,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기타 제1항에 대한 등록요건 및 심사기준은 영 제27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지점의 폐쇄) ①법인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8호〉의 지점폐쇄신고서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 처리시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보험대리점의 등록증 재교부 등

제32조 (재교부 신청) ①보험대리점이 등록증을 분실, 훼손 또는 제33조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재발급 신청서(별지서식 제19호)
2. 등록증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분실사유서(모집을 위탁한 보험 회사가 없을 경우 〈별지서식 제19-1호〉의 분실사유서)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처리결과 및 신규 등록증을 신청을 대행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절 보험대리점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제33조(변경신고) ①보험대리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는 대리점의 대표자 또는 법 제93조 제2항에 규정한 자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는 협회에서 처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대리점계약의 체결) 보험대리점이 규정 제4-7조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개인대리점
   가. 계약체결신고서 (별지서식 제20호)
   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서식 제 31호)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한함)
2. 법인대리점
   가. 계약체결신고서 (별지서식 제20호)
   나.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신고일로부터 3개월내 발급된 것)

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서식 제 31호)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한함)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가. 계약체결신고서 (별지서식 제20호)

나. 보험대리점 계약체결 증명서(판매제휴 계약서 등) 사본 1부.

제35조(대리점계약의 해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해지신고서(별지서식 제21호)
2. 제1호의 해지신고서(별지서식 제21호) 신청인이 보험회사인 경우 해지통지 내용증명우편 (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경우에 한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해지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의 2(간단보험대리점의 대리점계약 강제해지) ① 보험회사는 대리점 계약을 갱신할 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확인서(별지 서식 제 31호) 등을 제출받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제35조에 따라 대리점계약 해지신고를 협회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폐지) ①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신고서 (별지서식 제22호)
2. 등록증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발급한 분실사유서(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별지서식 제19-1호의 분실사유서)

②보험대리점이 복수의 보험회사와 계약체결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신청을

대행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전(全)계약체결사의 업무폐지를 동의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업무폐지동의서〈별지서식 제23호〉"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개인대리점은 제3항 제1호 가목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상기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대리점 대표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구비·지참하여 협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1. 개인대리점
   가. 계약체결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 또는 계약체결사로 발송한 해지통지 내용증명우편 각 1부(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나.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다. 제1항 제2호의 서류
2. 법인대리점
   가. 계약체결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 각 1부.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다. 보험대리점 대표의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라. 제1항 제2호의 서류

④ 제3항의 보험대리점 대표(개인보험대리점에 한함)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폐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항 각호 가목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는 제23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7조(효력상실) ①보험대리점(임원·유자격자 포함)이 법 제9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보험대리점(임원·유자격자 포함)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9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협회의 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1. 효력상실 등 신고서 (별지서식 제22호)
2. 제1항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 제9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8조(임원, 유자격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 ①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변경신고서(별지서식 제24호)
2. 고지사항(별지서식 제15호)
3. 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일로부터 3개월내 발급된 것)
4. 유자격자등록의 경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은 법 제8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 제33조의3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협회의 장은 법인대리점의 지점이 세칙 제2-10조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지점의 임원·유자격자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그 외 임원 및 유자격자 등록에 관한 심사기준은 영 제27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변경신고 중 말소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변경신고서 (별지서식 제24호)
2. 임원의 경우 등기말소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고일로부터 3개월내 발급된 것)

⑥보험대리점의 임원(대표제외) 및 유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및 신분증을 구비·지참하여 협회에 직접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보험대리점 임원(대표 제외)
   가. 직접말소 신청서(별지서식 13호)
   나. 등기말소된 법인등기부등본
   다.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2. 유자격자
   가. 직접말소 신청서(별지서식 13호)
   나. 해촉(퇴직)증명서 또는 소속 보험대리점대표에게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증명우편)
   다.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⑦ 제6항의 임원 및 유자격자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말소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서류(단, 신청서, 신분증 제외)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6항 제2호 나목의 제출서류에 관한 기준은 제25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9조(기타 변경사항 신고) ①보험대리점은 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변경신고서 (별지서식 제25호)
2. 법인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대리점이 주소, 상호, 자본금등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된 등기부등본
3. 법인대리점이 지분(주주) 구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주주명부
4. 임원·유자격자·보험설계사의 주민등록번호및 성명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창구판매자 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규정 제4-9조제1항에 의거 창구판매자(규정 제4-14조제4항에 따라 채용한 보험설계사[이하 "창판외 판매인"이라 한다.] 포함)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 제26호〉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서식의 규격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장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 등

제41조(등록의 신청) ①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별지서식 제26호)
2. 영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력서
4. 고지사항(별지서식 제28호)

② 보험회사를 통한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및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2조(등록의 심사) 협회의 장은 제41조의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법 제9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규정 제4-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제5호의 "보험대리점"은 "보험중개사"로 한다)

제43조(등록의 수리) ①협회의 장은 제41조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서식 제11호에 의한 보험설계사 등록부에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계사 등록부는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서식의 규격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44조(등록의 말소) ①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업무를 폐지한 때에는 별지서식 제29호의 신청서를 구비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등록말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보험설계사등록부에서 말소하고, 말소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한다. 단, 말소자 명단을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5조(수수료) ①협회의 장은 모집관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험신청자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시험신청 수수료 : 20,000원
2. 규칙 제28조에 따른 등록수수료

②보험회사 등은 제1항의 수수료를 신청월 또는 등록월의 익월말까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해당 보험중개사가 등록신청시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입할 수 있다.

③협회의 장은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별로 영수증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다만, 실제 수수료를 부담한 보험중개사가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협회의 장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동 수수료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시험 또는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별표 제3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제46조(손해보험 모집관리위원회) ①이 지침에서 규정한 보험설계사의 시험, 등록(신고) 말소 및 대리점 등록·신고 관련 업무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회 내에 "모집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모집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
2. 대리점 및 설계사 관리업무의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보험관련 법규 감독규정에 대한 건의사항

③모집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규정은 모집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7조(등록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관리) ①협회는 모집관리위원회의 결의 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회사에 모집관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및 해당 보험회사의 등록(신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이 지침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8조(지침의 세부운용사항) 협회의 장은 이 지침과 전산처리시설의 운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관계서류의 보존) 시험관련 서류, 보험설계사(또는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 서류 등 관계서류의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간단손해보험대리점 적용의 특례) 이 지침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및 간단손해보험설계사 관련업무를 위한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및 간단손해보험설계사 관련업무를 위해 별지서식을 사용

할 경우에는 손해보험 항목에 기재한 내용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및 간단손해보험설계사에 대하여 기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11. 18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지침 폐지) 손해보험자격시험및등록지침(2003. 5. 1)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손해보험자격시험및등록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8. 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06. 12.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07. 2. 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08. 3. 1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08. 6.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11. 1.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11. 7.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의 별지서식 제2호, 제3호 및 제25조 4항, 제39조 3항, 제41조 7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12. 7.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13. 10. 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14. 10.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15. 7.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16. 4.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18. 6. 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18. 9. 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21. 3.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22. 1.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23. 8.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별표 제1호〉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의 유형

부정행위 유형	내 용
대리응시	○ 시험신청자가 아닌 타인이 시험을 대리하여 응시하는 경우
문제지등 교환	○ 시험지, 답안지 또는 답안내용을 교환, 교부, 유포, 수령하는 행위
지시불응 등	○ 타인의 답안지 또는 연수교재를 엿보는 경우 ○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시험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시험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구분		대리응시	문제지 등 교환	지시불응 등
신청자 및 행위자	①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 당해 시험 무효 ○ 3년간 응시불가 ○ 보험사 감사실 통보	○ 당해 시험 무효 ○ 2년간 응시불가 ○ 보험사 감사실 통보	○ 당해 시험 무효 ○ 1년간 응시불가 ○ 보험사 감사실 통보
	②보험회사 직원	○ 당해 시험 무효 ○ 소속 보험회사의 장에게 문책 의뢰		
	③①,② 이외의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 3년간 응시불가	○ 당해 시험 무효 ○ 2년간 응시불가	○ 당해 시험 무효 ○ 1년간 응시불가
관리자	부정행위 발생 지점장 또는 점포장(1차 관리자)	○ 보험사 감사실 통보		-
해당점포	1회 발생시	○ 해당 점포 자격시험 신청금지 1개월		-
	2회 발생시	○ 해당 점포 자격시험 신청금지 2개월		-
	3회 이상 발생시	○ 해당 점포 자격시험 신청금지 3개월		-

※ 1.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적용일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시험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부정행위 발생일부터 적용

② 부정행위 발생일 이후 추후 적발된 건은 협회의 조사결과 통보일부터 적용.
다만 부정행위 발생일의 점포(지점)장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당시의 점포(지점)장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점포 자격시험 신청금지 기한에 대한 제재 적용일은 부정행위 발생일부터 적용한다.

2. 해당점포(보험사 지점 또는 보험대리점)의 부정행위가 4회 이상 발생시 제재 해당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3. 발생횟수의 계상은 적용월 기준 1년 단위로 한다.

〈별표 제2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영위업종 및 보험상품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의2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의3에 따라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

- 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 · 제공 · 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함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판매 예시〉

대리점 업종	판매상품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공인중개사)	주택화재보험
	부동산권리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주택화재보험
여행사업(국내·해외여행사)	여행자보험
여객운송업(내·외항여객선사)	여행자보험
정기항공운송업(항공사)	여행자보험
스포츠용품판매업(골프용품샵)	골프보험
골프연습장운영업(스크린연습장)	골프보험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애견샵)	애견보험
수의업(동물병원)	애견보험
중고자동차판매업(중고차매매상사)	제품보증연장보험
자동차신품판매업	제품보증연장보험
백화점	제품보증연장보험
	구매물품보상보험
기타 대형종합소매업(대형마트)	제품보증연장보험
	구매물품보상보험
	애견보험
가전제품 소매업(제조사 판매대리점, 가전제품판매점)	제품보증연장보험
	구매물품보상보험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여행자보험
	가계성종합보험
전자금융업	여행자보험
	제품보증연장보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권리보험

〈별표 제3호〉

시험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1. 협회의 응시신청 마감 전까지는 전액 환불할 수 있음

2. 협회의 응시신청 마감 후 취소분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음
   ①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③ 본인 사망
   ④ 그 외 모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서식 제1호〉

부당모집행위자 명부

소 속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등록(신고) 번 호	제재사유	제재기간	비 고

〈별지서식 제2호〉

수험신청서

응시구분 : ☐ 손해보험 ☐ 제3보험	소속구분 : ☐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응 시 일 자		응 시 지 역	
소 속	보험(주) 지역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유의사항〉

1. 설계사 또는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자가 시험 응시한 경우 무효
2. 시험신청 지역 및 일자를 달리하여 시험 응시한 경우 무효
3. 당월에 소속회사를 달리하여 복수의 지역에서 시험 응시한 경우 무효
4. 수험표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경우 무효
5.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당월 시험 무효 및 최고 3년간 시험 응시 불가
6. 답안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및 문제유형을 기입하지 않거나 잘못 기입한 경우 무효
7. 답안지를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작성(마킹)하지 않을 경우 무효
8. 제출한 답안지에 대한 책임은 응시생 본인에게 있으며, 수정 불가
9. 시험 당일 수험표 · 수험신청서(종이 출력 필요)와 신분증(실물) 지참 필수, 미지참시 응시 불가
10. 시험장 입실 시 모든 전자기기 전원을 꺼야하며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상기와 같이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보험설계사의 자격시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3호〉

수험표

수험번호 :	응시구분 :	☐ 손해보험	☐ 제3보험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응 시 일 자		응 시 지 역	
소속 (회사)	보험(주)		지역단

손해보험협회

〈별지서식 제4호〉

수험신청자 명단

신청일자 : 20 . . .

회 사 명 : 보험(주)

응시구분 : □ 손해보험 □ 제3보험

소속구분 : □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응시지역 :

일 련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계	총 명		

〈별지서식 제5호〉

제 호

합 격 증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우리 협회가 실시한 손해보험 및 제3보험 시험에 아래와 같이 합격하였으므로 합격증을 드립니다.

시험구분	합격일자	합격여부	합격번호
손해보험			
제3보험			

20 년 월 일

손해보험협회장

〈별지서식 제6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서

구 분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제3보험( )
회 사 명			
보험설계사 성명		점 포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생명보험사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등록중인 생명보험 회사명		등록조건	전속( )	교차( )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보험회사 대표 (인)

신청인 (인)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수수료
6,000원

※ 첨부서류
영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신청서를 보관, 협회의 요청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제7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고신청서

구 분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제3보험( )
		간단손해보험상품	
회 사 명			
설 계 사 성 명		대리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수수료
	6,000원

년 월 일

○○○○ 보험대리점 대표 (인)

신청인 (인)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영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간단손해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을 명기
※ 위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협회에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시에도 신청서를 보관, 협회의 요청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제8호〉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항목은 반드시 **자필**로 **'예', '아니오'** 해당란에 **○표, 서명 및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예	아니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3.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4.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예	아니오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6.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7.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영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이었던 자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	아니오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예	아니오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② 현재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보험회사·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사유 :)	예	아니오
③ 영 제32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되려는 자만 작성)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유 :)	예	아니오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보험설계사 등록 신청자 명단

신청일자 : 20 . . .
회 사 명 : 보험(주)
신청구분 : ☐ 보험회사 소속 ☐ 보험대리점 소속
영업구분 : ☐ 손해보험 ☐ 제3보험
간단손해보험상품 :

(신청인원 : 총 명)

등록번호 (신고번호)	성 명	주민번호	소속(점포·단체)		학력코드	경력코드	비 고
			점포·단체	코드번호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별지서식 제10호〉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피동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손해보험모집관리지침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위의 피동의인이 설계사로 등록 신청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법정대리인) : _____(인)

동의자(법정대리인) : _____(인)

※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친권자가 1인인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1인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첨 부 : 1. 동의인 인감증명 각 1부(원본)
2. 주민등록등본(또는 기본증명서) 1부(원본)

손해보험협회 귀중

〈별지서식 제11호〉

(앞 면)

보험설계사 등록부

신청구분	☐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 ☐ 임 원		
영업구분	☐ 손해보험 ☐ 제3보험 **간단손해보험상품** :		
성명, 상호 또는 명칭	(한 글)		
	(한 자)		
등록(신고)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록(신고) 일자		소속회사 및 점포	보험(주) 영업소(지소)
주 소	☐☐☐ - ☐☐☐		
(등록)신고 및 변경사항			
연 월 일	(등록)신고 및 변경내용		
제재에 관한 사항			
연 월 일	제 재 내 용		
등록(신고) 취소			
연 월 일	취 소 사 유		

〈별지서식 제12호〉

보험설계사 등록 말소신청자 명단

신청일자 : 20 . . .

회 사 명 :

신청구분 : ☐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 임 원 ☐ 연수생

영업구분 : ☐ 손해보험 ☐ 제3보험
☐ 간단손해보험(간단보험설계사만 체크)

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말소신청사유코드	비 고
계	총 명			

〈별지서식 제13호〉

직접말소 신청서

(협회 보관용)

☐ 손해보험 ☐ 제3보험	☐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 임 원 ☐ 유자격자

보험회사명 (보험대리점명)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전 화 번 호			
신 청 사 유			
신 청 일 자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절 취 선

직접말소 접수확인서

(말소자 교부용)

☐ 손해보험 ☐ 제3보험	☐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 임 원 ☐ 유자격자

보험회사명 (보험대리점명)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위와 같이 말소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손해보험협회

〈별지서식 제14호〉

(앞면)

보험대리점등록신청서 (개인)

처리 기간	사 진 (3×4)
20일	

등 록 구 분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자격구분	연수과정 이수	
				보험모집 경력	

대 리 점 명	보험대리점	전화번호	( ) -	
영 업 장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요건사항 연수과정 이수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요건사항 보험모집관련 경력기간	설계사·대리점·보험회사직원·기타 년 월		관련회사	
주요 경력				
영위하는 다른 업무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은 **보험상품과 관련된** 업종을 기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보험회사명	계 약 기 간	보험회사 확인
	년	

수수료
20,000원

보험업법 제87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손 해 보 험 협 회 장 귀중

※ 첨부서류
1. 보험업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력서
3.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4.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등록요건 확인서(별지서식 제31호)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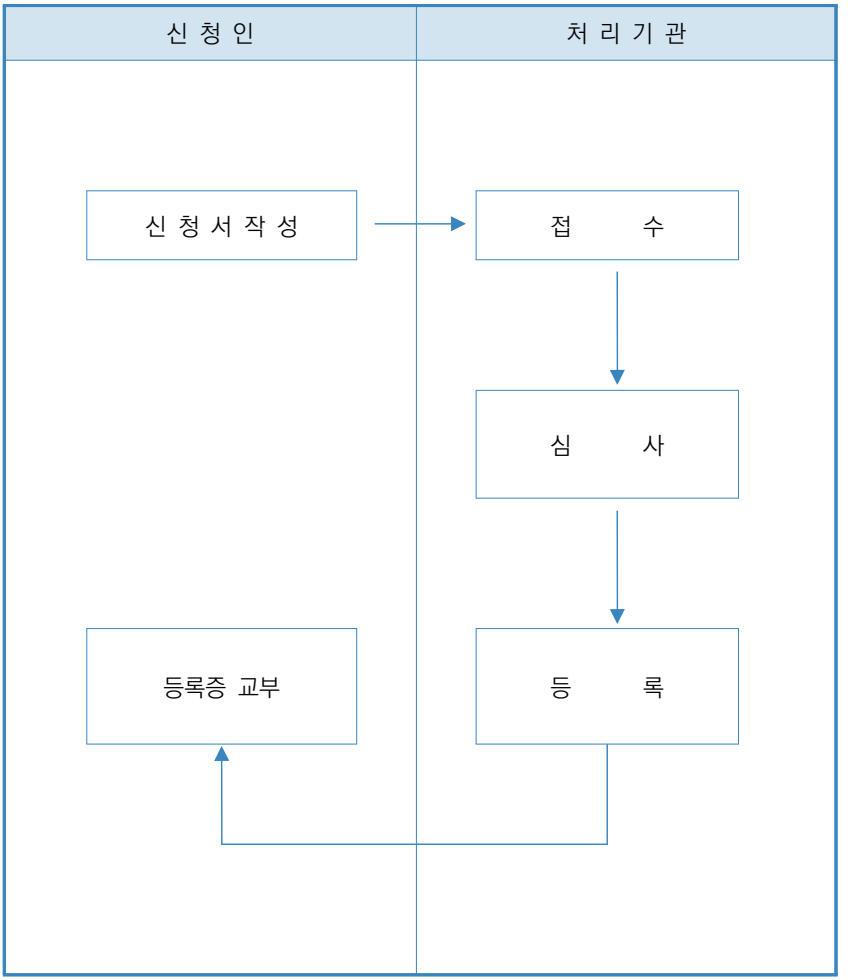

(앞 쪽)

보험대리점등록신청서 (법인)

처리 기간	대 표 사 진 (3×4)
20일	

등 록 구 분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자격구분	연수과정 이수	
			보험모집 경력	

대 리 점 명	보험대리점	전화번호	( ) -
영 업 장 주 소			
설 립 연 월 일		자본금	임직원 수
영위하는 다른 업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과 관련된 업종을 기재)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주 소			

임원 및 유자격자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격구분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보험회사명	계약기간	보험회사 확인
	년	

지점에 관한 사항

지점명	주소	연락처

보험업법 제87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손 해 보 험 협 회 장 귀중

수수료
200,000원(다만, 법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1,000,000원)

※ 첨부서류

1. 보험업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기부등본·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3.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임원 및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
4. 임직원 명부(법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영 제30조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제외)
5. 주주명부
6.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등록요건 확인서(별지서식 제31호)

(뒷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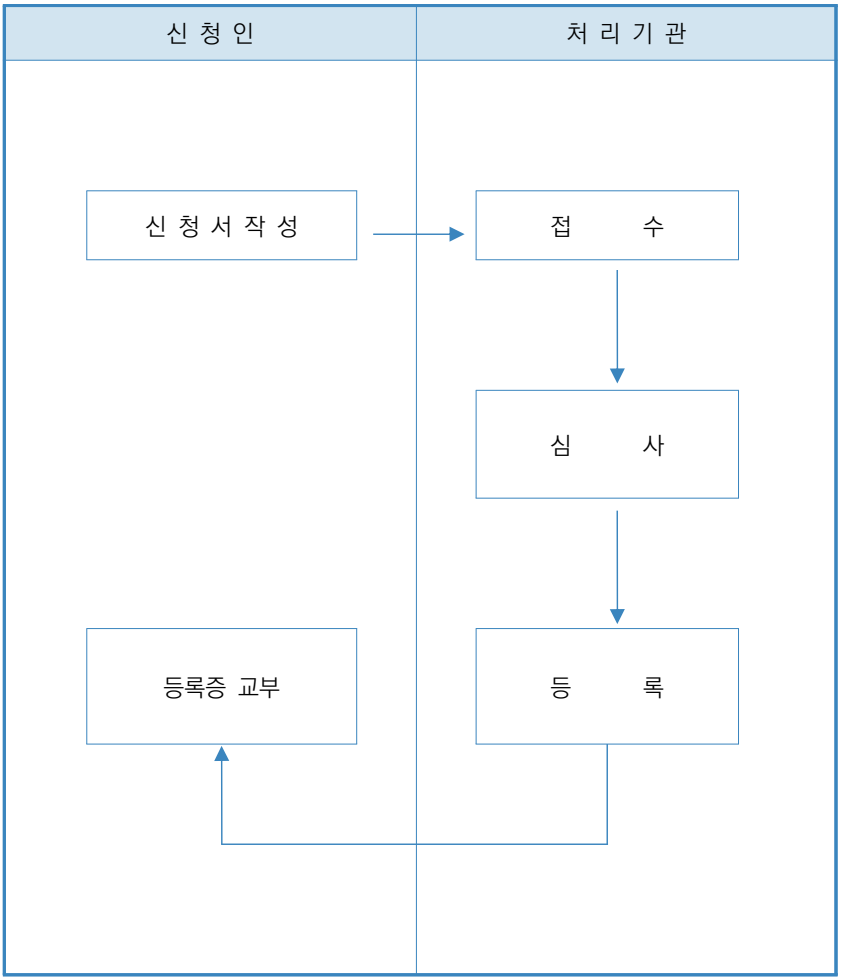

〈별지서식 제15호〉 (앞면)

보험대리점(개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항목**은 반드시 **자필**로 **'예', '아니오'** 해당란에 **○표, 서명 및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예	아니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3.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4.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예	아니오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6.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7.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	아니오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예	아니오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② 현재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보험회사·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사유 :)	예	아니오
③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일 이전에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 - 취소된 경우 그 사유와 취소일 : (년 월 일) - 해지된 경우 그 사유와 해지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④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5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융위 또는 금감원장으로부터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뒷면)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3.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이하 "보험중개사 유자격자"라 한다)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 또는 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⑤ 현재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예	아니오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 또는 ·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예	아니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예	아니오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예	아니오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	예	아니오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예	아니오
7.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	예	아니오
8.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예	아니오
⑥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까 ?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에 의거 사외이사 겸직 가능)	예	아니오
⑦ 보험업법 제87조의2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임원 신고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2.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니 아니한 자	예	아니오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손 해 보 험 협 회 장 귀하

(앞면)

보험대리점(법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항목**은 반드시 **자필**로 **'예', '아니오'** 해당란에 **○표, 서명 및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귀 법인 또는 귀 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 중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예	아니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3.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4.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예	아니오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6.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7.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	아니오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예	아니오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오
② 귀 법인의 임원 또는 유자격자 중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보험설계사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해당사유 :	예	아니오
③ 귀 법인 또는 귀 법인의 임원과 보험설계사중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일 이전에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 - 취소된 경우 그 사유와 취소일 : (년 월 일) - 해지된 경우 그 사유와 해지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④ 귀 법인의 임원과 보험설계사중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5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 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뒷면)

3.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이하 "보험중개사 유자격자"라 한다)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 또는 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4. 보험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 중개사의 임직원 -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년 월 일	예	아니오
⑤ 귀 법인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합니까?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예	아니오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 또는 ·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예	아니오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예	아니오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예	아니오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	예	아니오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예	아니오
7.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	예	아니오
8.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예	아니오
⑥ 귀 법인은 현재 다른 업무를 영위하거나 겸직하고 있습니까 ?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에 의거 사외이사 겸직 가능)	예	아니오

위 각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손 해 보 험 협 회 장 귀하

〈별지서식 제16호〉

보험대리점 겸업신고서

등록구분	손해보험		제3보험
대리점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기계약 보험회사			
겸업계약 보험회사		계약기간	

보험업 감독규정 제4-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17호〉

보험대리점등록대장(개인)

등록번호		등록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명				
대리점주소				
영위업종				
계약사항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계약체결일	계약해지일	계약범위
신고사항	신고내용		신고일	
업무종료일				
대리점 제재사항	제재내용		제재일자	

보험대리점등록대장(법인)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명			
대리점주소			
영위종목			

임원 및 보험설계사에 관한 사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일	변동내용
	대표자				

지점에 관한사항	지점명	지점소재지	지점설치일	지점폐쇄일

계약사항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계약체결일	계약해지일	계약범위

신고사항	신고내용	신고일

업무종료일	

대리점 제재사항	제재내용	제재일자

〈별지서식 제18호〉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폐쇄) 신고서

지점장 사 진

본점	대리점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지점	지점명		지점장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설치예정일 (폐쇄일)			전화번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 및 제2-10조 및 손해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날인 또는 서명)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19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보험대리점명	등록구분	등록번호	대표자	재발급신청사유

손해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19-1호〉

등록증 분실 사유서

등록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		
대리점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상기 대리점의 등록증 분실로 인하여 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리점대표자(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법인의 경우 보험대리점의 법인인감)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20호〉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등록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		
대리점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기계약보험사업자			
추가계약 보험사업자		계약기간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인의 경우 보험대리점의 법인인감)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21호〉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신고서

등록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		
대리점명		등록번호	
계약일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모집을위탁한회사		해지일자	
해지사유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인의 경우 보험대리점의 법인인감)

※ 내용증명 우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에 보험회사명을 기재하고 보험회사의 직인을 날인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22호〉

폐업등신고서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법 제93조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사유발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유 (해당사항에 ○표)	[ ] 업무폐지 [ ] 사 망 [ ] 해 산 [ ] 단체소멸

※ 관계증빙서류(업무폐지동의서 또는 내용증명 우편)첨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인의 경우 보험대리점의 법인인감)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 별지서식 제23호 〉

대리점업무폐지 동의서

대리점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			
용 도	업무폐지용	제 출 처	손해보험협회

※ 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담당자 확인서명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담당자	(인)

손해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제36조 제3항에 의거 위 대리점의 업무폐지를 동의합니다.

20 . . .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별지서식 제24호〉

임원 및 유자격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대리점명	
대리점등록번호	
대리점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말소/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지점	대표	이사	감사	유자격자			지점	대표	이사	감사	유자격자		
							생명	손보	3보					생보	손보	3보

보험업법 제9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경우, 손보항목에 간단손해보험상품 기재

※ 임원 및 유자격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인의 경우 법인대리점의 법인인감)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뒷 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말소/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지점	대표	이사	감사	유자격자			지점	대표	이사	감사	유자격자		
							생명	손보	3보					생보	손보	3보

〈별지서식 제25호〉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보험업법 제93조 및 손해보험모집관리지침 제3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변경년월일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변경서류 첨부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법인의 경우 보험대리점의 법인인감)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26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창구판매자 변경보고서

대리점명	등록번호	지점명	지점번호	신청자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신청구분
				손보	제3보				

년 월 일

신 고 자 :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뒷 면)

대리점명	등록번호	지점명	지점번호	신청자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신청구분
				손보	제3보				

〈별지서식 제27호〉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구 분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제3보험( )	
회 사 명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보험설계사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수수료 6,000원

년 월 일

신청인 ○○○○ 보험중개사 대표 (인)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영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서식 제28호〉

보험중개사(개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업법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예	아니오
② 현재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③ 현재 다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이십니까?	예	아니오
④ 현재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4. 손해보험중개사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예	아니오
⑤ 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보험중개사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	아니오
⑥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일 이전에 모집에 관한 부당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등록취소된 경우 취소일과 그 사유 :) (조치받은 경우 조치일과 그 사유 :)	예	아니오
⑦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업자와 보험업감독규정 제4-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예	아니오
⑧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5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및 그 처분일 :)	예	아니오
⑨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예	아니오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중개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29호〉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말소신청서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상호명칭
연 락 처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 호	사유발생 년월일	근무지 (본점 또는 지점)	비 고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30호〉

제 호

보험대리점 등록증

상 호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사업장 소재지 :

종 류 : 손해보험( )·제3보험( )

등 록 일 자 :

근 거 : 보험업법 제8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제3항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손 해 보 험 협 회 장

제 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증

상 호 :

대 표 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업 종 :

영위보험종목(상품) :

등 록 일 자 :

근 거 : 보험업법 제8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제1항, 제3항 및 제4-4조의2,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10조의 3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손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31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

신청인(회사) 본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에 따라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 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의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모집하려는 보험상품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 아 래 -

대리점명 : (□ 전자금융업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체에 해당하시는 경우, '□' 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보험상품 :

년 월 일

확인자(회사) : (날인 또는 서명)

손해보험협회 귀중

APPENDIX 2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매뉴얼

Appendix 2.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매뉴얼

I 지점 정의 및 설치 신고

□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이란

○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이면서도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지칭

※ 한편,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 회사이므로 그 지점 또한 상법상 지점*에 해당

* 본 점과 동일한 회사에 속 하며 본 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지배인이 영업하는 장소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해당여부(예시)

사 례	지점설치 신고 여부
① 동일건물내 본점(타지점포함)과 층을 달리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본점(타 지점 포함) 사무실과 동일주소지이지만 분리, 독립된 공간*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지점 신고 가능 * 층간, 출입문 및 법인등기상 주소 분리 등
② 다른 법인보험대리점과 사무실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영업장소로부터 독립적인 공간 및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에 지점인정 불가
③ 본점과 원격지인 관계로 1~2명 소수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계속·반복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이면서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지점 신고 필요
④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타 지역 사무소를 임대해 근무	지점설치는 법인보험대리점만 가능

□ 지점설치 신고 및 유의사항

○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반드시 관련법규의 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협회에 등록된 지점에서만 계속·반복적인 모집행위 가능

* 보험협회에서는 지점설치 신고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지점승인시 지점(등록)번호를 부여

*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지점(일명 지사·출장소 등)에 대해 일체의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안됨(단, 신규 개설대상에 대한 선지원은 예외)

근거법규

보험업법 제93조 (신고사항) ①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①, ②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제2-9 (지점의 설치) ①

Ⅱ 지점의 요건

□ 보험업법상 요건

○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은 독립적인 영업이 가능토록 물리적 공간과 모집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1명 이상의 유자격자가 상시 근무하여야 함.

〈지점 요건〉

① 독립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예) 별도의 사무실 및 컴퓨터, 전화, FAX, 기타 집기·비품 등
② 영업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생보, 손보 또는 제3보)별로 유자격자 1인 이상이 상시 종사(등록) 하여야 함

근거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②, ④, 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 (지점의 설치) ②, ③

□ 상법상 요건

○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 회사*로,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은 상법상 지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법의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지점 요건〉

① 지점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하는 영업소로, 본점과 주종 관계를 이루면서 그 지휘·감독을 받음

②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은 반드시 상업등기를 하여야 함 (상법 §181, §317③)

③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비용은 모두 본점으로 귀속됨

④ 지점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상업사용인은 본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이들에 대한 통제권 역시 모두 본점에 있음

⑤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분쟁은 본점에 귀속됨

근거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④

〈상법〉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180조 제1호 본문 (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289제1항제1호 · 제2호 · 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 제4호 ·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Ⅲ 지점설치 신고절차 및 심사

1. 신고절차

○ 지점의 설치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협회(생·손보 협회)에 신고하며, 신고회사 및 대상 유자격자의 자격범위(생보, 손보, 제3보)에 따라 신청하는 보험협회가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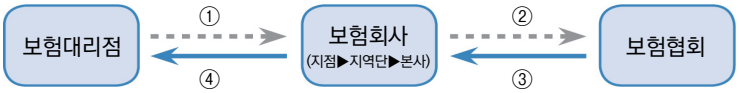

①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설치 신청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

* 보험회사 내부 등록과정에 따라 진행 (예) 지점 → 사업단 → 본사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지점설치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협회는 지점설치 여부 심사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게 결과 통보

2. 심사일정

○ 보험협회의 지점등록은 월 2회 실시하며(생·손보협회의 등록일정은 동일), 상세한 등록일정은 보험사 진행절차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

○ 지점설치신고 건에 대한 보험협회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주가 소요되나, 보험사 내부 진행일정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청

3.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추가 증빙서류
법인보험대리점	- 지점신청서 - 유자격자이력서 - 유자격자 고지사항 - 유자격자 자격증빙서류	- 등기부등본(원본) - 임차계약서(사본) - 물품, 설비목록 - 고용계약서(사본) - 지점운영기준

※ 생·손보협회 동시신청의 경우, 한쪽 협회에는 신청서, 고지사항외 다른 제출서류는 사본제출 가능

4. 주요 제출서류 요건

○ (등기부등본)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지점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등기상 주소와 실제 지점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함.

○ (임차계약서) 등기 및 실제지점의 주소에 소재한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계약자는 대리점 본점이어야 함(지점 직접계약 X)

② 보증금 및 임차료의 납부주체 역시 본점이어야 함.

③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 신청서상 주소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함.

○ (물품·설비목록) 지점운영에 필요한 설비목록(컴퓨터, 팩스, 전화, 집기 비품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비 구매, 관리에 대한 비용은 대리점 본점 또는 보험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 (고용·위임계약서) 지점대표는 본점에 소속된 자로서 본점과 고용 또는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점운영기준)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운영할 경우 동 지점의 운영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① 지점장의 권한 ·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지점내 인력 채용 및 관리기준

③ 지점장 포함, 지점내 인력 수수료 지급기준 및 방식

④ 지점 경비 처리기준

⑤ 지점내 영업기준

⑥ 지점내 분쟁발생시 처리방침

보험협회는 상기 제출자료를 근거로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상법에 근거한 지점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결과 지점요건 불충족시 지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Ⅳ 지점폐쇄 기준 및 절차

1. 지점 임의폐쇄

○ 법인보험대리점은 소속지점의 운영을 종료할 경우 폐쇄일로부터 7일내 보험협회에 해당 지점에 대한 폐쇄신청을 하여야 함.

2. 지점 강제폐쇄

○ 법인보험대리점은 소속지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하고, 폐쇄일로부터 7일내 보험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① 지점설치후 6개월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② 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③ 유자격 결원을 2개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 ③번 사항은 해당 지점에 등록된 전체 유자격자(생보, 손보, 제3보 유자격자 전체)가 모두 말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종 말소일로부터 2개월 경과시 해당 지점의 유자격자 충원 등(록)이 금지됨

○ 법인보험대리점이 협회에 지점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미등록 지점을 운영하거나, 기존 운영중이던 지점이 상기 ①~③번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지점을 폐쇄할 수 있음.

3. 지점폐쇄 신청절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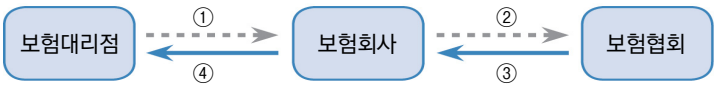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소속 지점이 지점폐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지점폐쇄 신청서류를 폐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제출

② 보험회사는 협회로 지점폐쇄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를 제출

③ 협회는 지점폐쇄 여부 심사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게 결과 통보

V 보험대리점간 합병시 협회등록사항 처리기준

1. 합병기준

○ 법인보험대리점의 합병은 합병 당사자인 법인 모두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만 인정

☞ 보험대리점이 아닌 법인과 법인보험대리점간의 합병은 불가

○ 법인보험대리점간의 합병은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단, 법인보험대리점간 합병은 흡수합병*만 인정되며 분할 및 신설 합병은 인정되지 않음.

* 보험대리점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겸영)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대리점업 사업부문만 분할하여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에 합병하는 방식은 인정

〈합병 인정여부 예 시〉

① (흡수합병) A(존속)보험대리점이 B(소멸)보험대리점을 흡수하는 경우 : 인정

② (분할합병) A(존속)보험대리점이 B(보험대리점업 폐지후 기타사업 유지)법인의 보험대리점 부문을 흡수하는 경우 : 인정(분할합병계약서 제출)

③ (전업분할) A(전업)보험대리점이 'A, A'로 보험대리점을 분할해, 각각 B, C 보험대리점과 합병시 불인정

2. 신고기준·절차

○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합병 전에 계약체결한 모든 보험회사에 합병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법인보험대리점의 합병신고는 계약체결한 보험사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함.

합병신고 제출서류

① 보험회사의 합병신고 공문 및 대리점의 합병처리 요청 공문

② 합병 사실이 기재된 관계 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

☞ 합병후 존속(신설)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소멸(피흡수) 법인의 등기도 제출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계약서도 제출

③ 계약체결된 보험회사로 합병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 사본 각 1부

○ 법인보험대리점이 계약체결한 보험사가 생보, 손보 모두 있을 경우 합병처리 신고는 생보협회, 손보협회에 모두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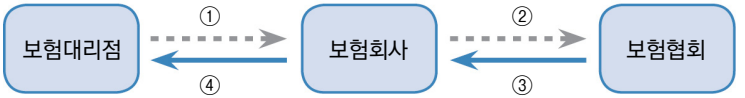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한 보험회사에 합병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② 보험회사는 협회로 합병처리 공문 및 관련서류를 제출
③ 협회는 합병처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3. 처리기준

○ 합병처리일 기준 흡수(소멸)되는 대리점의 소속 설계사 및 계약체결사항은 합병대리점으로 이관처리되나, 임원 및 지점등록사항은 합병과 동시에 이관되지 않고 별도 등록신고 필요

흡수(소멸)대리점 등록사항	처리기준	비 고
설계사(유자격자 포함)	합병(존속)대리점 이관처리	합병처리일 기준
계약사항	상동	등록유자격자 대상

근거법규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 이어야 한다.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VI 기타 유의사항

○ (등록증 부착) 보험대리점 지점은 대리점 등록증 사본을 점포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 하여야 함.

○ (지점상호)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 바, 동 상호에 다른 대리점상호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됨 (상법 §21②).

〈지점 상호 사용 예시〉

- 사용가능 : ㈜ OOO보험대리점 춘천지점 / 스타지점 등 (지명 또는 통상적인 일반명사)
- 사용불가 : ㈜ OOO보험대리점 ★★★지점 ⇒ '★★★' 상호가 유명 타 대리점상호일 경우

○ (변경신고) 지점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보험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신고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11.1.24일 이후 등록한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회사가 이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93)

법인보험대리점 경영공시 안내문

법인 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을 법령*에 따라 반기별 공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4

Ⅰ. 공시대상 : 법인 보험대리점 전체

※ 단,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입력기준일 현재 보험협회에 폐업신고 수리 완료된 대리점, 최근 반기 종료일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는 대리점, 최근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대리점 제외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 등 참조)

Ⅱ. 공시방법 :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반기별 경영현황 자료입력 및 공시

Ⅲ. 공시내용 및 자료입력

구 분	공시항목	내 역	입력주체
공통 항목	Ⅰ. 대리점	대리점명, 등록번호, 등록일	보험협회 (단, 영위하는 업무는 대리점)
	Ⅱ. 일반현황	본점 주소, 연락처, 임원현황	
	Ⅲ. 업무범위 및 모집 위탁계약 체결현황	영위하는 업무 및 영업범위	
		위탁계약 체결내역, 영업보증금	
	Ⅳ. 조직현황	모집종사자, 지점현황	
일반 대리점 (500인미만)	Ⅴ. 경영실적	신계약건수 및 금액, 불완전판매 사유 및 비율	보험회사
대형 대리점 (500인이상)	**Ⅵ. 재무·손익 현황**	자산, 부채, 자본/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손익 등	**보험대리점**
	Ⅶ. 경영지표	계약유지율, 설계사정착률, 불완전판매사유와 건수 및 비율	보험회사 (단, 설계사정착률 대리점)
	Ⅷ. 보험회사별·보험 종목별 모집실적 현황	보험사별/보험종목별 신계약건수 및 금액, 보험사별 수수료 현황	보험회사
	Ⅸ. 지적(주의)현황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주의 이상) 현황(기관/개인)	**보험대리점**

※ 법인대리점은 보험협회와 보험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 확인 후 공시통보

Ⅳ. 공시 기간 및 문의처

구 분	공시 입력기간	문의처
상반기	매년 7월~8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하반기	차년도 1월~2월	

Ⅴ. 공시방법

○ **(공시·입력화면)** 협회 홈페이지→e-클린보험서비스→GA업무지원→공시자료입력

○ **(공시항목 구분)** 공시항목 중 **"Ⅰ.대리점 ~ Ⅳ. 조직현황"**은 대형 및 일반 법인대리점 **공통 입력항목**이나 공시항목이 상이하여 법인대리점 규모에 따라 각각 **다른 공시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일반현황)** 대리점 개황, 업무범위 및 모집위탁계약 체결현황, 모집종사자 현황 등은 **협회에서 제공한 등록정보를 대리점이 확인 실시**

☞ **단, 영위하는 업무(보험대리점 이외 부수업무*)는 대리점이 직접 입력**

* 법인등기부등본上 타 영위 업종을 기재하고,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기

○ **(경영실적)** 신계약건수, 실적, 불완전판매율 등 실적정보는 **각 보험회사가 입력 및 취합한 자료를 협회에서 일괄제공**하고, **대리점이 확인 실시**

○ **(재무·손익현황/지적·주의현황)** 보험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으로 협회에서는 공시자료 입력화면만 제공하며 **각 대리점*에서 자체 보유 데이터를 근거로 직접 입력**

☞ **재무·손익현황 : 손·생보 협회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기재**(500인이상 대형대리점만 해당)

☞ **지적·주의현황 : 지적사항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재하고,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기**

법인보험대리점 공시내용에 대한 정확성 유지의 책임은 해당 보험대리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신고)** 보험대리점 등록 당시 협회에 신고한 정보(본 · 지점의 주소 또는 상호, 임원 등)가 변경된 경우, **공시와 별도로 반드시 보험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신고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Ⅶ Q&A

Q-1 손보(생보)협회를 통해서 지점을 설치하였는데, 해당 지점에서 생보(손보)영업을 하려면 생보(손보)협회로 다시 지점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다시 지점설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지점에서 생보(손보)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생보(손보) 유자격자를 1인 이상 동 지점에 등록시키면 가능

Q-2 법인보험대리점내 지점 간 소속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

○ 소속지점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수료 기준은 동일하여야 함

Q-3 지점대표(지점장)가 반드시 유자격자이어야 하는지?

○ 지점설치시 반드시 유자격자 1명을 등록시켜야 하며, 협회는 동 유자격자를 지점대표(지점장)로 등록하고 있음

Q-4 지점대표(지점장)가 손·생보 유자격자이어야만 해당지점에서 손·생보 영업이 가능한지?

○ 지점대표(지점장)가 유자격자이어야 하나, 반드시 동 대표가 손·생보 모두 유자격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지점대표가 없는 영업자격을 보유한, 다른 유자격자가 등록해도 가능함

Q-5 지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가 지점대표(지점장)일 경우의 인정여부

○ 모든 계약의 주체는 대리점 본점이므로, 지점장 명의 임대차계약은 인정 불가

Q-6 지점설치 신청시 반드시 지점장이 유자격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지?

○ 지점설치 신청당시 지점대표(지점장)가 유자격자 등록요건을 갖추거나, 동일대리점내 유자격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지점설치 예정일 2일 전까지 관련 요건들을 갖추어야 함(붙임1 참조)

Q-7 지점 설치시 동일대리점에 유자격자 또는 사용인으로 등록중 일 경우 반드시 말소를 해야 하는지?

○ 붙임1 참조

Q-8 지점내 손보(생보)유자격자가 말소될 경우, 말소된 날부터 손보(생보)영업이 금지되는지?

○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유자격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므로 말소일 익일부터 해당 보험종목에 대한 영업이 금지됨(붙임1)

붙임1)

지점대표(유자격자) 등록상태별 지점설치 신고방법

등록상태		신청방식	비 고
무등록 또는 타 대리점 등록		• 손·생보협회 중 택1하여 신청	기존 등록사항 말소 필요
동일대리점내 설계사 등록	손보+제3보	• 손·생보협회 중 택1하여 신청	• 손보협회 신청시 설계사 등록사항 말소 필요
	생보+제3보		• 생보협회 신청시 설계사 등록사항 말소 필요
	손보+생보+제3보		• 신청하는 협회에 해당하는 등록사항말소 필요
동일대리점내 유자격자 등록	손보+제3보	• 손보협회 신청	• 등록사항 말소 필요없음 • 손·생보협회 동시신청시 개설일이 동일해야 함
	생보+제3보	• 생보협회 신청	
	손보+생보 +제3보	• 손·생보협회 동시 신청	
동일대리점내 임원등록		• 손·생보협회 중 택1하여 신청	• 등록사항 말소 필요없음

※ 자격말소는 지점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함

예시)

① 대리점 설계사가 지점대표(유자격자)로 등록할 경우

◦ 방안1) 설계사 말소 → 본점 유자격자 등록 → 지점설치 신청

◦ 방안2) 유자격자 요건 충족 → 지점설치 신청 → 지점설치 예정일 전 말소

② 손·생보 영업이 모두 가능한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 방안1) 손보 또는 생보 유자격자로만 등록한 상태에서 해당 협회로 지점설치 신고를 하고, 지점설치 후 나머지 자격 취득후 유자격자로 추가등록

◦ 방안2) 손·생보 유자격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손·생보협회로 지점설치 동시신고

붙임2)

법인보험대리점 지점 운영기준(예시)

□ 목 적

이 규정은 지점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따로 정하는 이외는 본 규정에 의한다.

□ 지점의 설치 및 운영

①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 보험협회에 지점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점은 원칙적으로 본점과 동일한 회사에 속하여 본점과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점은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자체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본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점의 명칭은 ○○○대리점 ○○○지점으로 한다.
⑤ 지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등 관계법규의 기준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동 기준을 따른다.
⑥ 기타

□ 지점장 권한과 책임

① 지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지점의 지점대표(지점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동 지점대표(지점장)는 협회에 신고된 지점대표(지점장)와 동일하여야 한다.
② 지점대표(지점장)는 지점의 사무처리와 지점 설계사의 영업활동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지점대표(지점장)는 소관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기타

□ 인력 관리

① 지점의 모든 설계사는 본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본점은 해당 설계사의 입사(등록) 및 퇴사(말소) 관련사항 등의 기록, 유지 관리 업무를 관할한다.
② 지점에 신규 설계사가 입사할 경우, 해당지점은 동 사항을 본점에 신고하여야 하며, 본점은 내부심사를 통해 해당 설계사의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지점에 통보한다.
③ 기타

□ 수수료 지급기준 및 방식

① 지점내 모든 설계사의 수수료는 본점에서 일괄지급으로 한다.
② 수수료 규정은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본사는 설계사의 영업실적 수수료 규정을 정하여 지점에 공지하며, 지점대표(지점장)는 수수료 규정의 내용을 설계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본사는 수수료 규정의 개정이 있을 시, ○개월 전에 설계사에게 공지한다.
⑤ 기타

□ 수수료 환수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모집계약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된 이후, 해당계약이 해지, 철회, 취소,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환수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계약에 대한 환수 수수료를 당월 수수료 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한다.
② 수수료 환수후 당월 수수료 지급액이 마이너스(-)로 환수 수수료에 대해 당월 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이월하여 정산한다.
③ 기타

□ **경리 관리**

①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비용은 원천적으로 본점에 귀속되며, 본점에서 통제한다.
②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반 경리업무는 본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본사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기타

□ **영업 기준**

① 지점대표(지점장)는 본점의 영업추진 방향에 부합되는 지점 영업계획을 자체 수립한다.
② 영업계획은 주간, 월간, 반기, 연간 단위로 각각 수립한다.
③ 영업계획은 신계약 달성방안, 조직활성화 방안, 지표(수금률, 유지율 등) 달성방안 등을 포함해서 수립한다.
④ 기타

□ **서류 비치·관리**

① 지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험대리점 본점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항상 구비(비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점의 상업등기 증빙자료(본점 등기부등본)
2. 사무실 임대차(자산양수도)계약서 사본(임차인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대리점 대표이어야 함)
3. 물품·설비 목록대장
4. 물적 설비의 본점소유 및 관련 비용부담 증빙자료(보험회사에서 지원받을 경우 지원 증빙자료)
5. 지점에서 활동 예정인 지점대표(지점장)의 위촉계약서 사본
6. 지점 운영 및 지점장의 권한 등에 관한 내부기준

② 기타

□ 지점 폐쇄

① 지점대표(지점장)는 해당 지점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점 운영을 중단하고 동 사항을 본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점은 해당 지점을 즉시 폐쇄하고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점설치후 6개월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자격자 결원을 2개월 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타

□ 지점 표시 및 책임부담

① 지점은 점포 내부 적당한 위치에 보험대리점 등록증 사본을 부착하여야 하며,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보험대리점의 지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지점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점에 있으며, 지점은 분쟁발생시 본점에 해당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 분쟁발생시 처리방침

① 소비자 불만 및 민원업무는 신속히 처리하며, 관련부서 협의 후 처리한다.

②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사에서 직접 처리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귀속된다.

③ 기타

※ 상기 자료는 지점 운영기준에 대한 단순 참고자료로, 반드시 동 양식을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발행및편집 손해보험협회

인 쇄 처 태진애드컴 02) 2266-3530